



2024. 9. 25.

국회입법조사처 | NARS 입법·정책 | 제154호

프랑스 인구위기의 사회적 구성 및 가족정책의 시사점

박선권 |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프랑스 인구위기의 사회적 구성 및 가족정책의 시사점

박선권(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2024. 09. 25.





NARS 입법·정책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핵심적인 입법 및 정책 현안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입법·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3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심의절차를 거쳐 발간(2024. 09. 25.)되었습니다.

요 약

-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97년 처음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한 이래 2001년부터는 줄곧 0.2명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프랑스의 인상적인 인구관리는 일반적으로 프랑스 가족정책의 성공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음
 -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초저출산 장기지속 상태가 심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 대응의 전환점을 모색하는 데 참고 사례가 되어 왔음
 - 하지만 인구위기가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의제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가족 수당을 소개하고 특정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제한적인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큼
- 이런 맥락에서 보고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프랑스 가족정책의 형성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왜 오늘날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사회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기 위해 작성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프랑스 인구위기의 사회적 구성
 - 20세기 전환기 프랑스에서 인구위기가 사회적 의제가 된 것은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아니라 주변 경쟁국과의 비교에서 나왔음. 즉, 인구위기는 국제관계를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치현실주의에서 국가의 생존위기 혹은 안보위기로 정의되었음
 - 이 시기 출산감소는 국가적인 현상이었지만 그 양상은 계층에 따라 달랐음
 - 빈곤한 노동자 계층은 자녀를 갖고 싶어도 출산할 수 없었던 반면, 부르

주아와 사무직 종사자는 자녀를 가질 수 있어도 출산하지 않아 사회 전 계층에서 출산감소가 일어나고 있었음

- 이 시기의 인구 담론은 ‘출산 파업’으로 대표되는 산아제한론과 ‘국가 자살’을 경고하는 인구증가론이 대립하고 있었음
 - 산아제한론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인구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인구증가론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인구의 양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었음
- 이러한 두 가지 논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었지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사회적·국가적 대응은 두 가지 논리 모두에게서 나왔음. 즉, 아동, 여성, 가족을 보호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통해 출산을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수렴되었음
- 이와 같은 인구위기 대응 담론이 가족정책의 원형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가톨릭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은 고용주, 지식인과 개혁가, 가족단체, 여성단체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되었음

□ 가족정책의 기원

- 가족정책은 세기 전환기에 민간의 자발적 노력으로 전개되던 활동이 모성보호, 다자녀가족 지원, 양육지원 관련 각종 사회입법으로 제도화되면서 시작되었음
 - 1909년 모성 보호에 관한 「양제량법」, 1913년 가족수당의 시작인 「빈곤 다자녀가족지원법」, 1920년대의 다자녀가족을 위한 출산장려금 및 수당, 세제 혜택, 공공요금 및 학비 감면, 군 복무 혜택 등 가족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입법이 이루어졌음

□ 가족정책의 전개과정

○ 가족정책의 탄생(1932~1964년)

- 이 기간은 오늘날에도 프랑스 가족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간주되는 제도적 체계가 형성되어 갔던 시기였음. 즉, 출산주의라는 가족정책의 목표, 가족 간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라는 가족지원 원칙, 성별분업 및 모성보호 관련 수당의 제도화, 가족정책 주체로서의 가족단체 참여의 제도화, 가족수당 등의 가족혜택을 넘어서는 가족정책 범위의 확대 등의 발전이 이루어졌음

○ 가족모델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변화(1965~1980년)

- 이 기간은 전업주부에서 워킹맘으로의 전환으로 대표되는 가족모델의 변화 그리고 재정적 제약에도 적극적 가족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선별주의의 등장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였음. 즉,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려는 조치들과 건강보험과 노령연금의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제약 속에서도 가족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순위 인구 대상 혜택이 확충되고 소득 기준 혜택이 도입되었음

○ 가족정책의 강화와 확대(1981~1997년)

- 이 기간은 경제성장 둔화로 심화한 사회적 불평등을 가족정책을 통해 대응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던 시기였음. 특히 서구에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확산하여 가던 가운데서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1981년부터 14년에 걸쳐 장기 집권하면서 가족혜택의 증액 및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대응한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마련,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을 위한 사회통합 수당 도입, 가족수당 개혁의 쟁점화 등이 이루어졌음

○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의 결합(1997~2021년)

- 이 기간은 현행 프랑스 가족정책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시기였음. 가족혜택의 지속적인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영유아기 수당 및 서비스의 통합과 재편, 가족혜택 조정에 대한 오랜 논의 결과를 구체화한 2015년 「사회보장재정법」 개정,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통합적 생계소득 제도화 등이 이루어졌음

- 이상의 발전과정의 결과물인 현행 가족정책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가족정책의 정의, 목표, 기능, 주요 조치, 정책대상 및 지급금액 산정 방식, 2015년 개혁에 따른 가족수당 조정 등의 측면에서 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의 이해를 돕고 있음

○ 가족정책 체계

- 가족정책을 자녀의 출산·양육 지원 조치로 정의하고, 그 목표를 세대 간 재생산 지원 및 유자녀 가족의 생활수준 유지에 두고, 그 기능을 수평적·수직적 소득 재분배 메커니즘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유자녀 가족의 생활수준 저하를 줄이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가족정책의 주요 조치를 가족혜택과 가족세제혜택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정책대상을 20세까지의 아동으로, 지급금액은 매년 재평가되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가족수당 월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있음을 공표하고 있음
- 21세기 전환기를 거치면서 오랜 논쟁 끝에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가족부문 적자 완화를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가족수당 금액은 월 순소득이 €6,000를 초과하는 2자녀 가족은 절반으로, €8,000를 초과하면 4분의 1로 감액되는 가족수당조정원칙도 소개하고 있음

○ 가족정책 현황

- 2024년 현재 가족혜택에는 가족수당, 정액수당, 가족보조금, 가족부양수당으로 구성된 일반 부양 혜택, 출산/입양 보너스, 기본수당, 자녀교육분담혜택, 보육방식자유선택보조금으로 구성된 영유아기 출산·보육 관련 혜택, 장애아동교육수당, 장애성인수당, 신학기수당, 일일부모동반수당, 자녀사망수당으로 구성된 취약계층 특수 할당 혜택, 기타 이사보너스와 노동연대소득 등이 있음. 가족세제혜택에는 누진세, 가족계수, 세액조정 등이 있음
- 이러한 가족정책은 정교한 재분배 메카니즘을 통해 가구 간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가족정책 평가

- 이처럼 한 세기 이상의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던 프랑스 가족정책의 규모는 그 어느 국가 비해서도 큰 상태에 있음
- 2019년 기준 프랑스의 GDP 대비 가족혜택 공공지출 비중은 3.44%로 OECD 38개국 중 1위였고, 2021년 기준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80명으로 OECD 38개국 중 5위였으며 유럽국 중 1위였음
- 프랑스 정부는 가족정책이 하나의 전체로서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을 유럽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상 프랑스 인구위기의 사회적 구성과 가족정책이 향후 한국사회가 인구위기 대응의 전환점을 모색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인구위기의 사회적 의제화라는 측면에서 프랑스 사회가 인구위기를 주변 경

쟁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가의 생존위기 혹은 안보위기로 규정했던 것은 한국 정부가 인구위기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노년 인구 급증에 따른 부양비 부담 증가, 주택·교육 시장의 수요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등과 같은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됨

- 외부의 시선에서조차 한국의 생존위기라는 평가가 거듭되어 왔던 만큼 인구위기를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 유지의 문제를 넘어서는 국가의 존속과 안보에 관한 사안이라는 관점과 근본적인 대응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시사함
- 프랑스가 아래로부터 가족단체와 같은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를 정부가 제도화함으로써 가족정책을 발전시켜 왔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양육 당사자의 참여 없이 정부, 학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전문가 체계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극히 포괄적인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는 점에서 대비됨
 - 이는 향후 한국의 인구위기 대응에서 출산·양육 가족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 정책 기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프랑스는 가족정책을 자녀의 출산·양육 지원 조치로 정의하고, 그 목표를 유자녀 가족의 생활수준 유지에 두고, 그 기능을 수평적·수직적 소득 재분배 메커니즘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유자녀 가족의 생활수준 저하를 줄이는 것으로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
 - 이는 한국의 출산·양육 지원 조치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출산이야기하는 가족의 비용과 위험에 대응하여 어느 수준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어떤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유자녀 가족을 지원할 것인지 등의 측면에서 참조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는 가족정책을 가족에 대한 직접지원에 해당하는 일반 부양, 출산·보육, 취약계층 특수 할당 등의 가족혜택과 누진세, 가족계수 등으로 구성된 가족세제혜택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는 향후 한국의 2023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상 100여 개를 훨씬 상회하는 출산·양육 지원 제도들을 직접적인 가족지원을 중심으로 OECD 기준 가족지원 공공지출에 해당하는 현금급여, 서비스 급여, 세제혜택 등으로 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정책수요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비교와 평가를 통한 개선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2019년 기준 프랑스의 GDP 대비 가족혜택 공공지출 비중은 OECD 38개국 중 1위였고, 이에 따른 2021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유럽국 중 1위였음
 - 프랑스 정부가 지적하고 있듯이 가족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나 여타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인구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족정책이 하나의 전체로서 기여해 왔음을 주목해야 함을 보여줌
 - 이는 한국의 지난 20여년에 걸친 내실없는 가족정책이 출산·양육 확대를 지지하기보다는 인구감축을 가속화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성찰이 향후의 인구위기 대응을 모색함에 있어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의미함

차 례

□ 요약

I. 인구위기 대응 모범 사례로서의 프랑스 가족정책 / 1

II. 프랑스 인구위기의 사회적 구성과 가족정책의 기원 / 3

- 1. 프랑스 인구위기의 사회적 구성 3
 - 가. 국가의 생존위기로서의 인구위기 3
 - 나. 출산감소의 원인과 양상 4
 - 다. 산아제한론 대 인구증가론 5
 - 라. 인구위기 대응 방향으로서의 가족정책 6
- 2. 가족정책의 기원 8

III. 프랑스 가족정책의 전개과정 / 13

- 1. 가족정책의 탄생(1932~1964년) 13
- 2. 가족모델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변화(1965~1980년) 15
- 3. 가족정책의 강화와 확대(1981~1997년) 18
- 4.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의 결합(1997~2021년) 21

IV. 프랑스 가족정책의 체계 및 현황 / 26

1. 가족정책 체계	26
가. 가족정책의 정의 및 목표	26
나. 가족정책의 기능	27
다. 가족정책의 주요 조치	28
라.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29
마. 가족수당 조정	30
2. 가족정책 현황	31
가. 가족혜택	31
나. 가족세제혜택	44
다. 가족정책 평가	49

V. 한국의 인구위기 대응에 대한 시사점 / 54

□ 참고문헌 / 61

표 차례

[표 1] 1920년대 프랑스의 가족지원 입법	11
[표 2] 가족정책의 전개과정(1932~1964년)	14
[표 3] 가족정책의 전개과정(1965~1980년)	17
[표 4] 가족정책의 전개과정(1981~1997년)	19
[표 5] 가족정책의 전개과정(1997~2021년)	23
[표 6] 가족수당 금액	32
[표 7] 정액수당 금액	32
[표 8] 가족보조금 금액	33
[표 9] 가족부양수당 금액	33
[표 10] 출산/입양 보너스 금액	34
[표 11] 기본수당 금액	35
[표 12] 자녀교육분담혜택 금액	36
[표 13] 자녀교육분담혜택 지급 기간	36
[표 14] 보육방식자유선택보조금 금액	37
[표 15] 장애아동교육수당 금액	38
[표 16] 신학기수당 금액	40
[표 17] 일일부모동반수당 금액	41
[표 18] 자녀사망수당 금액	41
[표 19] 이사보너스 금액	42
[표 20] 노동연대소득 정액	44
[표 21] 2023년 소득 적용 누진세 과표	45
[표 22] 가족 상황에 따른 과세 지분수	46
[표 23] 고소득 납부금	47
[표 24] OECD 국가별 GDP 대비 가족혜택 공공지출 비중 추이(2010-2019) ..	49
[표 25] OECD 국가별 합계출산율 추이(2012-2021)	51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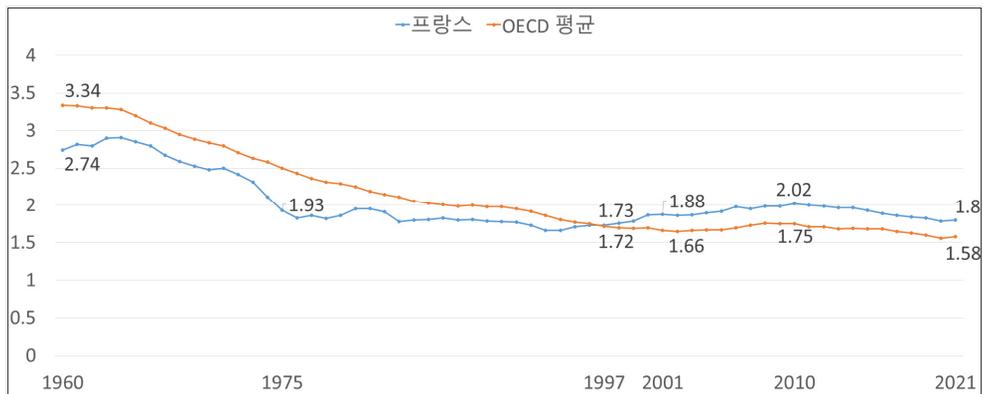
[그림 1] 프랑스 합계출산율 추이(1960~2021년)	1
[그림 2] 프랑스 인구 추이(1800~1900년)	3

I. 인구위기 대응 모범 사례로서의 프랑스 가족정책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2.74명으로 OECD 평균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1975년 1.93명으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를 기록하였다. 이후 점진적인 하락세 속에서도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지속해서 줄여나가다가 1997년 처음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한 이래 2001년부터는 줄곧 0.2명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프랑스 합계출산율 추이(1960~2021년)

(단위: 명)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4.4.15. 검색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추이는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저출산 현상에 대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하나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의 타당성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인 합계출산율 하락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프랑스만은 2010년 2.02명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¹⁾

1) Tomáš Sobotka, “글로벌 불확실성과 유럽 국가의 출산율 동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12. pp.17-44.

이와 같은 프랑스의 인상적인 인구관리는 일반적으로 프랑스 가족정책 (politique familiale)의 성공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²⁾ 실제로도 2019년 기준 프랑스의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율은 3.44%로 OECD 평균 2.29%, EU 평균 2.58%를 크게 상회하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³⁾

이렇게 볼 때,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2006년부터 19년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을 통해 범국가적 저출산 대응을 해왔음에도 초저출산 장기지속 상태가 오히려 심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 대응의 전환점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가족정책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구정책이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의제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가족수당을 소개하거나 특정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제한적인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즉, 현재의 시점에서 가족수당의 규모나 특정 제도의 유무에 대한 단선적인 비교만으로 국가소멸 단계에 진입한 한국의 인구위기 대응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이 보고서는 프랑스 인구위기의 사회적 의제화와 그 대응으로서의 가족정책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왜 오늘날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사회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는 프랑스 가족정책의 역사를 통시적(diachronic)으로 추적하고 현행 제도를 공시적(synchronic)으로 조사함으로써 프랑스 인구위기 대응의 전체적인 면모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2) 전광희, 「유럽 선진국의 인구·가족정책의 전개과정-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사회과학연구』 제16권, 2005, p.212; 나병균, 「프랑스의 초기 가족정책과 정책행위자별 역할」, 『한국사회정책』 제14집 제2호, 2007, p.347; 신윤정, 「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가을호 Vol.2, p.25.

3) OECD, *Family Database*, 2024.4.16. 검색

II. 프랑스 인구위기의 사회적 구성과 가족정책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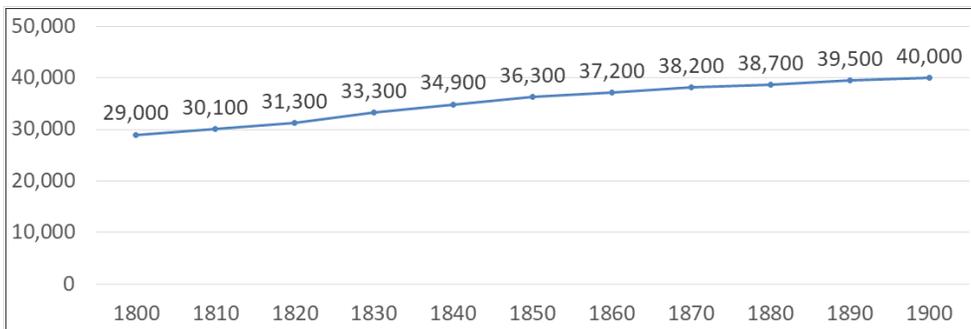
1. 프랑스 인구위기의 사회적 구성

가. 국가의 생존위기로서의 인구위기

20세기 전환기 프랑스에서 인구위기가 사회적 의제가 된 것은 대체출산율 이하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라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인구위기의 문제들(problematique)과는 거리가 있었다. 즉, 19세기 내내 프랑스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다.

[그림 2] 프랑스 인구 추이(1800~1900년)

(단위: 천명)



자료: Statista, *Population of France from 1700 to 2020*, 2024.6.15. 검색

이처럼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인구위기란 용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된 것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서 나왔다. 다시 말해 프랑스에서 인구에 대한 우려는 항상 주변 경쟁국과의 비교와 관련되어 있었다.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7.19. ~ 1871.5.10.)에서 패배를 경험한 프랑스는 인구수를 국가 방어의 핵심으로 간주했다. 1872년 프랑스와 독일의 인구 차이는 4백만 명이

었으나 1896년에는 1천4백만 명이었다. 영국의 인구증가 또한 프랑스에 비해 두드러졌다. 1901년 당대의 인구통계학자이자 위생주의 의사였던 베르티용(J. Bertillon)은 19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독일 인구는 7백만 명이, 영국 인구는 4백만 명이 증가했음을 거론하며 프랑스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다.⁴⁾

이처럼 프랑스에서 인구위기라는 사회적 의제는 통계학적인 인구감소가 아니라 인접 국가와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제기되었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인구증가를 국가의 쇠퇴이자 재앙으로 간주했던 프랑스 특유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었다. 요컨대, 프랑스의 인구위기는 국제관계를 경쟁과 갈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치현실주의(political realism)에서 국가의 생존위기 혹은 안보위기로 정의되고 있었다.

나. 출산감소의 원인과 양상

출산감소는 국가적인 현상이었지만 그 요인은 계층에 따라 달랐다. 노동자 계층의 경우 경제적인 원인이 지적되었다. 노동자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세 명의 자녀를 갖게 될 경우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라는 의회의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의 기술처럼 출산감소는 경제적 조건에 따른 것이었다.⁵⁾

반면 경제적 제약이 없는 계층의 경우에는 출산기피가 원인이었다. 당시의 통계에 따르면, 파리에서 출산이 적은 구들은 부유한 지역들이었다. 빈곤한 가족은 자녀의 노동력이 가족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많은 자녀를 두기를 원했던 것과는 반대로, 부유한 가족은 재산을 물려줄 한 자녀를 가진 후에는 여가생활을 즐기려 했다. 이러한 부유층의 출산기피 문화는 사무직 중

4) 민유기, 「출산 파업'과 '민족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응: 프랑스 가족보호정책의 기원, 1874-1914」, 『西洋史論』 제89호, 2006, p.149; 전광희, 2005, pp.213-214.

5) 민유기, 2006, p.152.

사자들에게서도 삶의 질을 추구하는 당대의 신말서스주의적(neo-malthusian) 태도로 반향되고 있었다. 이들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자녀 수를 제한하려고 했다. 이는 부르주아 가족 모델이 전파된 결과였다.⁶⁾

요컨대, 빈곤한 노동자 계층은 자녀를 갖고 싶어도 출산할 수 없었던 반면, 부르주아와 사무직 종사자는 자녀를 가질 수 있어도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전 계층에서 출산감소가 일어나고 있었다.

다. 산아제한론 대 인구증가론

이상의 논의에서 예견될 수 있듯이, 이 시기의 인구 담론은 산아제한론과 인구증가론으로 크게 나뉘어 있었다.

페미니스트 위오(Marie Huot)는 1892년 한 공개 강연에서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위한 ‘출산 파업’(la grève des Ventres)을 주장했고, 신말서스주의자 콜레(Fernand Kolney)는 1908년 동일한 제목의 팸플릿에서 점진적인 인구감소, 민중의 의지적인 피임 같이 방법론적으로 계산된 계급의 자살이 사회의 전반적인 변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나키스트 로뱅(Paul Robin)은 1896년 ‘인간쇄신동맹’(ligue de la régénération humaine)을 설립하고 『쇄신』(Régération)을 발행하여 신말서스주의를 확산시켰다. 그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임신을 피하고 여성이 자신의 운명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주장했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무관심을 비판했다.⁷⁾

이러한 산아제한론의 대척점에 있는 인구증가론은 인구감소를 ‘국가 자살’(suicide national)로 보는 담론이었다. 인구증가론자들은 인구감소를 사회적·국가적 재앙으로 간주했다. 인구감소로 인해 프랑스가 정치적·군사적 힘은 물론 경제적·지적·도덕적 영향력까지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20세기

6) 민유기, 2006, p.153.

7) 민유기, 2006, pp.154-156.

전환기에 인구감소는 ‘국가 종말의 시작’이며 ‘국가 자살’이라는 주장이 널리 확산하고 있었다.⁸⁾

라. 인구위기 대응 방항으로서의 가족정책

신멜서스주의적 산아제한론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인구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인구증가론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인구의 양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논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었지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사회적·국가적 대응은 두 가지 논리 모두에게서 나왔다. 즉, 아동, 여성, 가족을 보호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통해 출산을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수렴되었다.⁹⁾

이와 같은 인구위기 대응 담론이 가족정책의 원형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고용주, 지식인·개혁가, 가족단체, 여성단체 등과 같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보호는 가톨릭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고용주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9세기 내내 가톨릭 사회운동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관심의 중심에는 대다수 노동계급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불행을 완화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자본과 노동,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와 상호 의무를 검토한 교황 레오 13세(Leo PP. XIII)의 회칙 『노동현장』(Rerum Novarum, 1891.5.15.)이 있었다. 이에 따라 루베(Roubaix)에서는 노동자와 고용주가 출산금고(caisse de maternité)를, 투르쿠앙(Tourcoing)과 아르망티에르(Armentières)에서는 고용주와 노동자위원회가 가족금고를 운영했고, 철도회사는 가족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고용주의 가부장적 온정주의(paternalisme)와 결합한 것이었지만 이후 국가 차원의 가족정책에 영향을 미쳤다.¹⁰⁾

8) 민유기, 2006, p.158.

9) 민유기, 2006, p.173.

1890년대부터 국가의 자살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조직화한 것은 1896년 창립된 지식인과 개혁가의 단체인 ‘인구감소대응전국동맹’(Alliance nationale contre la dépopulation, 이하 ‘인구동맹’)이었다. ‘인구동맹’은 인구재생산을 위해 두 자녀가 부모를 대체하고 한 자녀는 두 자녀가 출산하기 전에 사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므로 모든 가족이 세 자녀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직접세를 면제하고 세 자녀 미만 가족에게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여 세수 감소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동맹’은 군 복무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자녀 수가 많으면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자녀의 군 복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동맹’은 1896년 11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다자녀가족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국가가 불행한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본질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부모가 신생아에게 먹일 능력이 없다면 사회가 깨끗한 우유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인구동맹’은 국가와 사회의 양육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가족정책의 탄생에 기여했다.¹¹⁾

다자녀가족의 사회적 권리를 요구한 가족운동(mouvement familial) 단체의 아래로부터의 압력도 가족정책의 형성을 촉진했다. 1894년 7월 몽펠리에에서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상호부조 단체로 결성된 최초의 다자녀가족 단체인 ‘몽펠리에 가족’(La Famille Montpelliéraine)을 필두로 하여 1904년까지 3개 지방 소도시에서 유사 단체가 등장했고, 1907~1908년에는 알레(Alais), 사오느-에-루아르(Saône-et-Loire), 오와즈(Oise) 등 3개 도에서 다자녀가족 아버지 단체가 설립되었다. 가톨릭 가족단체도 1905년 앵(Ain) 도의 생-람베르(St-Rambert)를 시작으로 1908년까지 전국적으로 50개 정도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지역 운동을 결

10) 민유기, 2006, pp.162-163; 나병균, 2007, pp.355-364.

11) 민유기, 2006, pp.158-160.

집하여 전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다자녀가족 보호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1908년 8월 1일 설립된 ‘다자녀가족부모민중연맹’(Ligue populaire des pères et mères de Familles nombreuses, 이하 ‘다자녀가족연맹’)이었다. ‘다자녀가족연맹’은 1911년 4월 9일 시위를 한 뒤 국회의장을 만나 넷째 자녀부터 수당 지급 또는 세금 감면,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공무원에 다자녀가족 가장 우선 채용, 다자녀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다자녀가족 주택 정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911년 11월 1일 ‘다자녀가족연맹’ 전국대회는 다자녀가족지원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모든 산하 단체와 지역연맹을 전국연맹으로 대체하기로 결의했다. 1차대전 이전까지 전국연맹은 60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이러한 가족운동은 1896년부터 ‘인구동맹’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가족 보호 입법 논의를 다시 활성화했다.¹²⁾

개혁적인 중산층 여성운동도 가족보호 관련 입법에 기여했다. 1901년 여성단체들은 1만여 명의 회원으로 ‘전국여성회의’(Conseil national des femmes)를 결성했다. 1913년 6월 파리에서 열린 국제여성회의에서는 첫째로 프랑스 의회가 임신부휴가법을 이룬 시일 안에 처리할 것, 둘째로 이 법의 수혜자 확대를 위해 새로운 법을 이룬 시일 안에 마련할 것, 셋째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든 여성을 위한 임신·출산 보상 방안을 연구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의결했다.¹³⁾

2. 가족정책의 기원

이처럼 세기 전환기를 거치며 민간의 자발적 노력으로 전개되던 활동이 모성 보호, 다자녀가족 지원, 양육지원 관련 각종 사회입법으로 제도화되면서 인구감소 대응으로서의 가족정책이 시작되었다.

12) 민유기, 2006, pp.160-161.

13) 민유기, 2006, p.162; 나병균, 2007, p.374.

보수당 하원의원이었던 앙제랑(Fernand Engerand)은 1906년 출산전후 여성 보호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1909년 11월 27일 통과된 모성 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인 「앙제랑법」(loi Engerand)에는 “출산 전후 8주 동안 연속해서 여성이 근로를 중단하는 것은 고용주에 의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여성은 결근 사유를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반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이다. 여성은 1심 법원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단 하나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앙제랑법」이 통과되자마자 영아 사망률 감소 활동으로 잘 알려진 상원의원 스트로스(Paul Strauss)는 유급 근로 여성의 출산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또 다른 법안을 발의했다. 그의 주장은 주로 소아과 의사들의 과학적 연구에 기반을 두었으며, 독일의 지배력에 직면한 프랑스 인구감소의 국가적 위험을 경고했다. 1913년에 통과된 「스트로스법」(loi Strauss)은 임신 여성에게 유급휴가 권리를 부여했다. 산전 휴가는 선택 사항이었지만 가정 외 유급 근로 여성에게 4주간의 의무 산후 휴가가 부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내 근로 여성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1928년 「사회보험법」(loi sur les assurances sociales)에 무상 의료 및 보상 수당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면서 출산수당이 근로와 연계된 권리로 확립되었다.¹⁴⁾

다자녀가족 지원 입법은 1913년에 이루어졌다. 자녀들 둔 노동자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톨릭 사회운동에서 기원했고, 이에 관심을 가진 산업지대의 고용주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는 ‘인구동맹’을 통해 많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대한 보상 요구로 발전했고, ‘다자녀가족연맹’을 통해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1902년 샬롱-쉬르-마른(Châlons-sur-Marne) 시에서 월 150프랑 이하 일용노동자 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확산되어 1910년에는 대부분 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했다. 이러한 다자녀가족 지원은 1913년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었다. 1911년 10월 15일 하원에 다자녀가

14) Françoise Battagliola, *La loi Engerand, première loi sur la protection de la maternité* 27 novembre 1909(<https://francearchives.gouv.fr/>), 2024.6.24. 검색

족 보호 그룹이 결성되었고, 1912년 7월에는 '빈곤 다자녀가족 지원과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 부서 간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 논의를 거쳐 1913년 7월 14일 13세 미만의 자녀가 4명 이상이고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가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빈곤다자녀가족지원법」(*loi sur l'assistance aux familles nombreuses nécessiteuses*)이 통과되었다. 이것이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의 시작이었다.¹⁵⁾

1차대전 종전 이후에는 국민 블록(*Bloc national républicain*)으로 알려진 중도우파 정부(1919-1924)가 다자녀가족의 시대를 열었다. 1920년 1월 27일, 위생·지원·사회복지부(*l'Hygiène, de l'Assistance et de la Prévoyance sociale*) 장관이었던 브르통(*Jean-Louis Breton*)의 주도로 '인구동맹'이 참여하는 '고등출산협의회'(*Conseil Supérieur de la Natalité, CSN*)가 설립되었다. 협의회는 인구감소에 반대하고, 출산률을 높이고, 보육을 개선하고, 다자녀가족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연구하고, 모든 프로젝트와 발의안에 도입될 수 있는 출산 관련 조항을 검토했다.¹⁶⁾

1924년 총선에서 승리한 좌파 카르텔(*Cartel des gauches*) 정부의 프로그램에는 출산감소 극복이나 다자녀가족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고등출산협의회는 주도로 1926년 '어머니날'(*fête des mères*)이 공식화되었을 뿐이었다. 1928년 총선에서 중도우파가 승리한 이후 관련 주요 입법이 다시 이루어졌다. 1920년대의 다자녀가족을 위한 주요 입법 조치들은 첫째로 출산장려금 및 수당, 둘째로 세제 혜택, 셋째로 공공요금 및 학비 감면, 군 복무 혜택 등이었다.¹⁷⁾

15) Histoire à la source, *Assistance aux familles nombreuses*(<http://histoirealsource.ille-et-vilaine.fr/>), 2024.6.24. 검색; 민유기, 2006, pp.170-172.

16) Virginie De Luca Barrusse, *La politique familiale, un tabou électoral?*(<https://laviedesidees.fr/>), 2012.4.17. 2024.5.28. 검색

17) 민유기, 「20세기 전반기 프랑스 가족보호정책과 사회보장개혁의 공론장 형성」, 『中央史論』 33집, 2011, p.222.

[표 1] 1920년대 프랑스의 가족지원 입법

시기	주요 내용
1920. 2.	16세 미만 세 자녀 가족, 두 자녀를 둔 과부나 홀아비 가족 빵 가격 할인
1920. 4.	1년 뒤부터 도별로 셋째 혹은 넷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위한 정부 예산 사용
1920. 5.	다섯 자녀 이상 가족에게 프랑스 가족메달 메달 수여와 각종 혜택 제공
1920. 6.	30세 이상 독신 소득세 납부액의 25% 추가 납부, 결혼 후 2년 내 자녀 없는 가장 소득세 납부액의 10% 추가 납부
1920. 9.	세 자녀 이상 가족 박물관 입장료와 철도요금 감면
1921. 1.	세 자녀 이상 소득이 없는 가족 최우선 공공구호
1921. 3.	아이 있는 병사, 전쟁에서 두 형제를 잃은 병사, 아버지 사망으로 가장이 된 병사의 식민지 파병 제외
1923. 7.	「다자녀가족장려법」(La loi d'encouragement aux familles nombreuses): 13세 이하 혹은 학업 연장이나 직업훈련 기간인 경우 16세 이하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 세 번째 아이부터 양육수당 지급, 세 자녀 이상 가족 세금 감면
1923. 7.	자녀수에 따른 소득세 비율 감소, 상속세와 양도세 감면
1924. 4.	부양자녀 있는 공무원 정년 최대 3년 연장 가능
1926. 6.	자녀수에 따른 학비 감면, 장학금 지급
1926. 7.	파리 세 자녀 이상 가족 수도, 전기, 가스, 철도 요금 할인
1928. 3.	군 승진 시 가족 수 고려, 가계 책임 병사 군 복무 중 가족부양수당 지급
1928. 4.	출산의료비 환급, 출산수당 지급
1929. 9.	결혼 병사 식민지 파병 금지
1930. 9.	세 자녀 이상 가장 병사 군 복무 단축, 여섯 자녀 가장 병역 면제

자료: 민유기, 2011, p.223. 재구성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을 통한 가족정책의 등장은 신멜서스주의에 대한 인구 증가론의 정치적 승리वाद도 무관하지 않았다. 즉, 1920년대 중도우파 정부는 출산 파업을 옹호하는 신멜서스주의를 제약했다. 1920년 7월 31일에는 「낙태선동 및 임신반대 선전 처벌법」(loi réprimant la provocation à l'avortement et à la propagande anticonceptionnelle)을 제정했고, 이를 1923년 3월 27일 낙태를 범죄화하는 법으로 수정하여 강화했다.¹⁸⁾

이러한 흐름은 가족정책이 본격화된 1930년대 좌파 정당의 태도 변화로도 이

어졌다. 1920년대 대부분의 좌파 정치인들은 낙태를 여성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았다. 신멜서스주의의 선전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회당 의원들은 1928년 낙태금지 폐지를 요구했고, 공산당과 급진당도 이에 동의했다. 또한 공산당 의원들은 1932년 하원에서 낙태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1930년대 중반부터 바뀌었다. 억압적인 낙태 금지에는 반대했지만, 낙태가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이며 여성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초래한다며 낙태의 완전한 자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¹⁹⁾

18) Germain Sicard. *La préparation de la loi du 31 juillet 1920*, Presses de l'Université Toulouse Capitole, 2000(<https://books.openedition.org/>), 2024.5.28. 검색

19) 민유기, 2011, pp.244-245.

Ⅲ. 프랑스 가족정책의 전개과정

1. 가족정책의 탄생(1932~1964년)

이 기간은 오늘날에도 프랑스 가족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간주되는 제도적 체계가 형성되어 갔던 시기였다. 즉, 출산주의라는 가족정책의 목표, 1913년 「빈곤 다자녀가족지원법」에서 드러난 가족 간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라는 가족지원 원칙, 성별분업 및 모성보호 관련 수당의 제도화, 가족정책 주체로서의 가족단체 참여의 제도화, 가족수당 등의 가족혜택(Les prestations familiales)을 넘어서는 가족정책 범위의 확대 등의 발전이 이루어져 갔던 시기였다.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39년 「가족 및 출산 법」(Le Code de la famille et de la natalité)은 법률 명칭에서 보듯이 프랑스 가족정책의 ‘친출산주의적 목표’(un objectif nataliste clairement affiché)를 명시한 최초의 입법이었고, 이러한 다자녀 정책은 첫째 자녀 수당 폐지와 자녀 수에 따른 지원의 누진성 강화 조치에서 확인된다.

둘째, 1932년 「랑드리법」(loi Landry)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추가임금(sursalaires) 제공을 일반화한 것, 1939년 「가족 및 출산 법」에서 셋째 자녀부터 수당 규모의 누진성을 강화한 것, 1946년 「재정법」(loi de finances)에서 소득세 체계에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를 도입한 것 등은 모두 수평적 형평성 제고라는 가족지원 원칙이 구현된 것이었다. 즉, 자녀 양육 비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일종의 추가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무자녀 가족과 유자녀 가족 간의 생활수준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었다.

셋째, 1938년 여성이 일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가산수당(majorations) 신설, 1939년 가산수당의 주부수당(allocation de mère au foyer)으로의 변경, 1946년 외별이수당(allocation de salaire unique) 등은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반영한 제도였

고, 1946년 산전수당(allocations prénatales)과 출산수당(allocation de maternité)은 모성보호와 관련된 제도였다.

넷째, 1942년 「구노법」(loi Gounot) 그리고 1945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국가족단체연합(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familiales)은 가족의 이해관계를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옹호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가족운동 단체의 대표 기구였다. 전국가족단체연합은 이념으로는 가족주의와 출산주의를 지향하고 원칙적으로는 보편주의 입장을 견지했는데,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정부 때 시작된 가족컨퍼런스(conférence de la famille)에도 참여하여 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가족정책의 중흥을 이끌어 내는 등의 주요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함으로써 프랑스 가족정책의 역사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²⁰⁾

다섯째, 1945년 다자녀 가족에게 유리한 가족계수, 1948년 저소득층 주거수당(allocation logement), 1963년 시설보호 장애 미성년자 특수교육수당(allocation d'éducation spéciale, AES) 등의 도입은 1946년 정의된 4대 가족혜택을 넘어 세제혜택과 특수육구에 대한 혜택으로 가족정책 범위가 지속해서 확대되어 갔음을 보여준다.

[표 2] 가족정책의 전개과정(1932~1964년)

일시	주요 내용
1932. 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랑드리법」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산업 및 상업 분야의 모든 직원에 대한 가족추가임금원칙(le principe des sursalaires familiaux)을 일반화함 · 고용주는 보상금고(caisse de compensation) 가입이 의무화됨 · 수당 금액은 직업 범주와 부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0) 전국가족단체연합은 1982년 12월 첫 번째 가족연례컨퍼런스부터 참여하였음 (Danièle Rouard, *La première conférence annuelle de la famille M. Pierre Mauroy annonce une série d'améliorations pour 1983*, Le Monde, 1982.12.18). 전국가족단체연합을 포함한 여러 가족운동 진영들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에 관한 세부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나병균, 「프랑스의 가족운동과 전국가족단체연합(UNAF): 가족운동의 변천과 그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Vol.36, No.4, 2009.12. pp.60-67.

일시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개입은 여전히 제한적임(부서별 최저 금액 설정, 각 금고에 대한 장관 승인 절차) 	
1938. 1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으로 임금과 회사로부터 독립된 가족수당이 창설되고, 지속될 원칙을 제시함. 가족 규모에 따른 누진적 수당과 가족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여타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첫째 자녀의 수당 지급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여성이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가산수당을 신설한 것임 	
1939.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및 출산 법」이 제정됨 이는 명시된 출산주의적 목적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진정한 가족정책임 이를 위해 셋째 자녀부터 수당 규모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첫째 자녀 수당을 폐지하고 첫째 출산보너스를 지급하며, 가산수당을 주부수당으로 변경함 	
1942.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노법」으로 ‘가족단체’(associations familiales)의 대표를 조직화함 비시 정부는 합법적인 가족들을 유일한 도덕적 조합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가족헌장(Charte de la famille)’을 만들려고 시도함 	
1945.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으로 전국가족단체연합(UNAF) 내에 연합된 지방가족단체연합(unions départementales des associations familiales, UDAF)이 창설됨 	
1945. 1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으로 새로운 사회보장레짐(nouveau régime de la sécurité sociale)을 확립하고 가족수당금고의 행정구조와 재정조직을 수정함 이는 고용주의 독점을 폐지하고 가족수당금고를 통일되고 중앙집중화된 사회보장 구조에 통합함 	
1945.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6년 「재정법」에서 유자녀 부부에게 유리하도록 소득세 체계에 ‘가족계수’를 제도화함 	
1946. 8.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로 사회보장 가족부문의 네 가지 혜택을 정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째 자녀부터 자산조사 없이 지급되는 가족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외벌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수당
1948.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조사에 따른 주거수당이 창설됨 	
1963. 7.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미성년자 특수교육수당(AES)이 창설됨 부모가 장애 혹은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상태에 맞는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특수시설(établissement spécialisé)에 배치된 아동만이 수급자격이 있음 	

자료: Vie publique, *La politique de la famille depuis 1932: chronologie*(<https://www.vie-publique.fr/>), 2024.4.17. 검색

2. 가족모델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변화(1965~1980년)

이 기간은 전업주부(mère au foyer)에서 워킹맘(mère qui travaille)으로의 전환으로 대표되는 가족모델의 변화²⁾ 그리고 재정적 제약에도 적극적 가족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선별주의(*sélectivité*)의 등장으로 특징지어진다. 즉,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려는 조치들과 건강보험(*assurance maladie*)과 노령연금(*prestations vieillesse*)의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제약 속에서도 가족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순위 인구(*populations prioritaires*) 대상 혜택이 확충되고 소득 기준 혜택이 도입되었던 시기였다.²²⁾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5년 기혼 여성의 법적 능력, 직업 선택, 재산 관리에서의 평등권을 확립한 혼인재산제도(*régimes matrimoniaux*) 개혁, 1967년 피임권(*le droit à la contraception*) 확립, 1970년 부권(*la puissance paternelle*)의 부모공동친권(*l'autorité parentale conjointe*)으로의 대체, 1972년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수당(*allocation pour frais de garde*) 신설²³⁾, 1975년 임신중단 합법화, 1975년 이혼 유형 확대 등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과 관련된 입법이었다.

둘째, 1970년 고아수당(*allocation orphelin*), 1971년 미성년장애수당(*allocation aux mineurs handicapés*) 및 성인장애수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1972년 청년가구대출(*prêts aux jeunes ménages*), 1974년 신학기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1976년 한부모수당(*allocation de parent isolé*), 1977년 개인맞춤형주거지원(*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등의 도입은 우선순위 인구에 대한 선별지원을 통해 가족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확충해 나아갔던 조치였다.

셋째, 1978년 소득 기준에 따라 3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에게 지급

21) Jeanne Fagnani, *L'intégration progressive du modèle de « la mère qui travaille » Trente ans de politique familiale en France*, Spirale 2001/2 (no 18), pp.139-155.

22) Vie publique, *La politique de la famille depuis 1932: chronologie*(<https://www.vie-publique.fr/>), 2024.4.17. 검색

23) Jeanne Fagnani, *L'intégration progressive du modèle de « la mère qui travaille » Trente ans de politique familiale en France*, Spirale 2001/2 (no 18), p.145.

하는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²⁴⁾의 창설은 기존의 외벌이수당과 주부수당 그리고 앞서 언급한 보육수당 등을 대체하는 것으로 과거 성별분업에 기반한 지원과 그 보완 조치를 통합하면서도 다자녀 지원을 겨냥했던 선별지원 제도였다.

[표 3] 가족정책의 전개과정(1965~1980년)

일시	주요 내용
1965.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재산제도’ 법률 개혁으로 기혼 여성의 법적 능력이 유효해짐 · 남편은 더 이상 아내가 별도의 직업을 갖는 것을 반대할 수 없음 · 재산 관리에서 배우자의 평등을 확립하고, 결혼 계약이 없는 경우 법적 제도가 되는 부부법정재산제(<i>communauté réduite aux acquêts</i>)²⁵⁾ 도입 · 각 배우자는 자신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1967.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비어스법」(<i>loi Neuwirth</i>)으로 ‘피임권’이 확립됨
1970. 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i>loi 70-459</i>)로 ‘부권’을 ‘부모공동친권’으로 대체함. 적법한 자녀의 경우 "자녀의 건강, 안전, 도덕성을 보호할 권한은 부모에게 속한다. 그들은 양육권, 감독권, 교육권을 갖는다."
1970. 1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아수당 창설
1971.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수당(AES)에서 제외된 아동을 위한 미성년장애수당과 성인장애수당(AAH) 신설
1972.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로 보육수당, 청년가구대출을 신설함
1974. 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6세 취학아동 신학기수당을 신설하고, 첫째 자녀부터 자산조사를 거쳐 지급함
1975. 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일법」(<i>loi Veil</i>)으로 적절하게 정의된 조건 하에서 자발적인 임신중단을 합법화함
1975. 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개혁법률(<i>n°75-617 portant réforme du divorce</i>)로 유책 사유에 의한 이혼을 복수의 이혼 사례로(상호동의이혼, 요청수락이혼, 유책사유이혼 및 동거파탄이혼)으로 대체하여 이혼 조건을 개정함. 이혼의 자유(<i>liberté de divorcer</i>) 확대
1976.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한부모가 차등수당(<i>allocation différentielle</i>)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수당을 신설
1977.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맞춤형주거지원(APL) 신설
1978.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보조금의 창설로 셋째 자녀에게 우선권이 부여됨. 가족보조금으로 외벌이수당, 주부수당, 보육수당을 대체함

자료: Vie publique, *La politique de la famille depuis 1932: chronologie*(<https://www.vie-publique.fr/>), 2024.4.17. 검색

24) Chloé Jacquet, *Comprendre le complément familial: droits et démarches*(<https://blog.placedudroit.com/>), 2024.4.17. 검색

25) 결혼 계약을 하지 않은 부부에 대해 결혼 이후 각 배우자가 번 재산만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제도. Légifrance, *Loi n° 65-570 du 13 juillet 1965 portant réforme des régimes matrimoniaux*(<https://www.legifrance.gouv.fr/>), 2024.4.17. 검색

3. 가족정책의 강화와 확대(1981~1997년)

이 기간은 경제성장 둔화로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가족정책을 통해 대응하려는 노력이 확대되었던 시기였다. 특히 서구에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확산하여 가던 가운데서도 사회주의와 진보주의를 대표하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1981년부터 14년에 걸쳐 장기 집권하면서 가족혜택의 증액 및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대응한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마련,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을 위한 사회통합 수단 도입, 가족수당 개혁의 쟁점화 등이 이루어진 시기였다.²⁶⁾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1년 가족수당 및 주거수당 증액과 수급자 확대, 성인장애수당 증액, 1985년 출산·입양·양육을 위한 부모휴가 관련 부모교육수당(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APE) 신설 및 1994년 확대 등은 가족혜택의 강화 및 확대와 관련된 조치였다.

둘째, 1985년 부모교육수당 신설에 이은 1986년 가정보육수당(allocation de garde d'un enfant à domicile, AGED) 신설, 1990년 등록보육사고용지원(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AFEAMA) 신설, 1994년 어린이집 확충계획 등은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조치였다.

셋째, 1988년 최저 소득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출산 및 출산 예정의 자녀가 한 명 이상이며 사회적·직업적 통합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회통합최저소득(revenu minimum d'insertion, RMI)²⁷⁾을 신설한 것은 빈곤층의 사회

26) 미테랑 대통령의 7년씩 2기에 걸친 재임 기간에 좌우를 오가는 7개 내각이 구성되었음에도 출산주의라는 가족정책 기조가 지속될 수 있었던 정책 주체들의 동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박해남, 「20세기 프랑스 가족정책의 변화와 복지 엘리트의 역할」, 『프랑스학연구』 98, 2022, pp.134-140.

27) Légifrance, *Loi n°88-1088 du 1 décembre 1988 relative au revenu minimum d'insertion* (<https://www.legifrance.gouv.fr/>), 2024.4.22. 검색

적 연대와 통합이 가족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미테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1995년 말에는 공화당 소속의 알랭 쥐페(Alain Juppé) 총리가 가족수당 과세, 수급자 제한, 수당 금액 축소 등을 둘러싼 쟁점화를 시도했지만,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쟁점화는 이후 가족정책 조정을 둘러싼 새로운 정책담론 지형이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표 4] 가족정책의 전개과정(1981~1997년)

일시	주요 내용
1981. 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선출로 가족정책의 전환점이 됨 새 정부는 모든 수당을 유의미하게 업그레이드하고 관리를 단순화할 계획임 이는 가족 규모와 자산에 따른 권리를 조정하고 차별을 줄이는 동시에 자산조사 수당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1981.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1년 하반기부터 가족혜택 변화: 7월 1일 가족수당 25% 증액 그리고 같은 날과 12월 1일 주거수당 평균 거의 50% 증액, 수당 기준 개편으로 수급자 범위 확대. 성인장애수당 41% 증액
1985.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3세 미만 자녀의 출산, 입양 또는 양육과 관련하여 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부모교육수당(APE) 신설 영아수당(allocation pour jeune enfant, APJE)으로 산전산후수당(allocations prénatales et postnatales)과 가족보조금을 통합: 3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임신 3개월부터 생후 6개월까지 지급. 자산조사에 따라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연장될 수 있음
1985. 1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재산제도에 관한 법률」로 다음을 규정함: 각 배우자가 가구유지 또는 자녀교육을 위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아내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각 배우자가 결혼생활 비용을 지불한 후 자신의 수입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각 배우자가 자신의 능력에 비례하여 결혼생활 비용을 부담할 의무
1986.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과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famille)로 가정보육수당(AGED) 신설: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를 원하는 부모에게 3세 미만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AGED는 가정보육사(garde à domicile)의 고용으로 발생하는 사회(보장) 및 고용주 납부금의 평균 금액에 해당함 동법에서 3세 미만의 자녀 수만큼 지급되던 영아수당도 개정: 다태아 출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조사 기간, 즉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부터는 한 번만 지급, 임신 기간과 생후 3개월까지는 자산조사 없이 지급
1987.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친권법」(n° 87-570 Loi Malhuret)으로 친권 행사를 미혼 부부와 이혼 부부에게까지 확대. 다만 판사의 개입이 필요
1988.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통합최저소득(RMI)에 관한 법률 88-1088 공포
1990. 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개정 및 ‘영유아보육 가족혜택 및 고용지

일시	주요 내용
	<p>원'(prestations familiales et aux aides à l'emploi pour la garde des jeunes enfants) 관련 법률(No. 90-590)로 등록보육사고용지원(AFEAMA)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지원은 보육사를 고용하여 보육사의 가정에서 특정 연령의 부양 자녀를 한 명 이상 돌보는 가구 또는 독신자에게 지급. 지원 금액은 등록보육사 고용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고용주 및 노동자 납부금과 동일함
1993.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n° 93-22)로 공동양육의 일반원칙을 규정함 기혼이든 미혼이든 부모가 함께 살면서 생후 1년 이내에 자녀를 인지한 경우 두 사람 모두 친권을 행사함. 친권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직접 파생됨 부모는 자녀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유로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만 친권 행사를 박탈당할 수 있음 또한 결혼법원 판사를 대신하는 가정법원 판사를 신설함
1994. 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법」(loi sur la famille)으로 다음을 규정함 둘째 자녀에 대한 부모교육수당 확대, 시간제 근로 시 수당 지급,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시간제 근로를 할 때 두 개의 부모교육수당 합산 등 또한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부모휴가(congé parental) 권리를 확대. AEFAMA와 AGED가 재평가되고 입양수당(allocation d'adoption)이 규정됨 일정 수의 가족혜택 할당을 위해 고려되는 아동의 연령 제한은 늦어도 1999년 12월 31일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임 또한 어린이집(crèche) 개소 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영유아보육발전계획(schémas de développement locaux de mode d'accueil des jeunes enfants)을 제공함. 다만 이 계획은 여전히 선택 사항임
1995. 1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랭 쥐페(Alain Juppé) 총리가 제출한 사회보장개혁안에 대한 국회토론회 이 계획은 가족 부문의 경우 다음을 포함함: 1996년 혜택 동결, 1997년부터 가족수당 과세, CSG 과세 기반 확대(가족 부문에 혜택), 모든 가구가 아닌 저소득 가구에 영아수당 지급(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가족주거수당 및 개인주거수당 산정시 모든 대체소득 고려. 일일출산수당(indemnités journalières de maternité)을 순 급여의 106% 대신 100%로 축소
1996.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례가족컨퍼런스(conférence annuelle de la famille) 개막식에서 알랭 쥐페 총리는 다양한 가족정책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자산조사 가족수당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컨퍼런스 말미에는 가족수당에 대한 과세 안건도 제기했음
1997.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행정법원(Cour des Comptes) 원장 엘렌 지스호(Hélène Gisserot)가 작성한 전국 가족컨퍼런스 준비 보고서 공개 보고서에는 "가족 시간"(temps familial) 개발, 전업부모 역할 인정(부모시간 바우처(chèque temps parental) 신설), 가족 연대 촉진, 가족의 미래 대비 자산형성 지원(가족 저축(épargne-famille) 신설) 등이 담겨 있음 또한 가족혜택제도의 단순화를 지지함, 가족수당 과세에 반대하지만 대체 성격의 수당에 대한 과세에는 반대하지 않음
1997. 3.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컨퍼런스에서 알랭 쥐페 총리가 주요 조치를 발표함 3자녀 이상 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19세까지 연장, 가족수당 과세 안건 포기

자료: Vie publique, *La politique de la famille depuis 1932: chronologie*(<https://www.vie-publique.fr/>), 2024.4.17. 검색

4.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의 결합(1997~2021년)

이 기간은 현행 프랑스 가족정책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시기였다. 즉, 가족혜택의 지속적인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영유아기 수당 및 서비스의 통합과 재편, 가족혜택 조정에 대한 오랜 논의 결과를 구체화한 2015년 「사회보장재정법」 개정,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통합적 생계소득 제도화 등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 가족수당 20세까지 연장, 가족혜택 사각지대 가족에 대한 신학기수당 지급 및 가산액 확대, 1999년 신학기수당 증액 및 가족보조금·주거수당 연령제한 21세로 상향, 25세 미만 불안정 청년근로자 주거수당 증액, 2000년 중증질환 아동을 위한 부모동반수당(allocation de présence parentale) 신설 및 부모교육수당 수급 종료자 직장복귀지원(aide à la reprise d'activité des femmes) 신설, 2002년 아버지휴가(congé paternité) 도입, 2005년 새로운 부모휴가(congé parental) 신설 및 보육비용 세액공제(crédit d'impôt) 2배 확대, 다자녀가족카드 도입, 부모동반수당(allocation de présence parentale) 개혁, 2006년 어린이집 추가 신설 등 3세 미만인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 개발 및 다양화, 출산휴가 사용 유연화, 2014년 중증질환 자녀 부모휴가 부여, 2018년 보육 및 돌봄 인프라 확충계획 채택 및 출생아 입원 시 아버지휴가 연장, 2020년 아버지 및 영아돌봄 휴가 연장, 입양휴가 연장 등은 프랑스 가족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보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이다.

둘째, 2003년 가족컨퍼런스에서 기존의 영아수당, 입양수당, 부모교육수당, 가정보육수당, 등록보육사고용지원 등의 5개 혜택을 대체하는 영유아보육혜택(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 도입이 결정되었다. 영유아보육혜택은 기존 혜택을 단순화 및 명확화하고 저소득 가정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영유아보육혜택은 출산/입양 보너스(prime à la naissance ou à l'adoption), 기본수당(allocation de base), 직업활동자유선택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보육방식자유선택보조금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등으로 재편되었다.²⁸⁾

셋째, 가족수당 소득 기준 도입 등 오랜 논의가 지속된 끝에 2015년부터 가족수당 조정 조치가 시행되었다. 1997년 사회당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 총리는 가족수당의 자산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1998년 사회당 도미니크 질로(Dominique Gillot) 의원의 비판으로 결국 가족수당 조건 철폐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전국가족수당금고(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의 균형 회복과 다양한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권고하는 가족지원에 관한 프라고나르(Bertrand Fragonard) 보고서가 사회당 장마크 에로(Jean-Marc Ayrault) 총리에게 제출되었고, 2014년에는 가족혜택 절감 계획이 발표되었다. 결국 「사회보장재정법」의 개정으로 2015년 7월 15일부터 월 소득이 6,000유로 이상인 부모에게는 가족수당이 ½로, 월 소득이 8,000유로 이상인 부모에게는 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소득에 따른 가족수당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가족정책의 수평적 형평성 논리에 따른 고소득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 끝에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둬으로써 수직적 형평성도 기해야 한다는 논쟁의 결과에 따른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족수당금고의 균형 재정 해법과 관련된 조치이기도 했다.

넷째, 2008년 빈곤에 대응하고, 직업활동을 시작하거나 복귀하도록 장려하고, 사회에 통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혜자에게 적절한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의 사회통합최저소득(RMI), 한부모수당 및 직장복귀(reprise d'activité)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메커니즘 등을 대체하는, 노동연대소득(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을 신설한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통합적 입법이었다.²⁹⁾

28)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é, *Circulaire DSS/2 B/ n° 2003/612 du 22 décembre 2003-relative à la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https://sante.gouv.fr/>), 2024.4.22. 검색

29) Légifrance, *LOI n° 2008-1249 du 1er décembre 2008 généralisant 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et réformant les politiques d'insertion (1)*([https://www.legifrance.gouv.fr /](https://www.legifrance.gouv.fr/)), 2024.4.23. 검색

[표 5] 가족정책의 전개과정(1997~2021년)

일시	주요 내용
1997. 6. 19.	• 총리 리오넬 조스팽이 일반정책 연설에서 가족수당 자산조사 발표
1997. 12. 19.	• 「사회보장재정법」(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97-1164)으로 가족수당 자산조사와 가정보육수당(AGED) 삭감을 규정함
1998. 6. 3.	• Val d'Oise (PS) 의원인 도미니크 질로는 "가족정책 개혁을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가정보육수당(AGED) 개혁과 가족수당 자산조사 결정을 비판함 • 특히 가족계수를 낮추고 수당지급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것을 권고함
1998. 6. 12.	• 연례가족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총리가 가족수당 조건을 철폐하고 가족계수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발표함 • 가족수당도 20세까지 지급하기로 함
1998. 12. 23.	• 1999년 「사회보장재정법」으로 가족수당 자산조사를 폐지함. 또한 필요조건을 충족하지만 다른 가족혜택을 받지 못하여 혜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녀의 가족에게 신학기수당 및 그 가산액을 확대함
1999. 7.	• 연례 가족컨퍼런스 주요 조치 발표: 1998-99년 신학기수당을 429프랑에서 1,600프랑으로 인상, 가족보조금 지급 연령제한을 20세에서 21세로 상향, 주거수당 계산 시 고려하는 아동 연령 제한을 20세에서 21세로 상향, 25세 미만의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수당 25% 증액, 영유아보육서비스(prestations d'accueil de la petite enfance) "전면 수정"을 위한 실무 그룹 구성, 공동보육을 위한 법적 체계의 현대화, 총리는 또한 신학기수당 인상을 영속화하고 CNAF가 이를 점진적으로 인수한다고 발표
1999. 11. 15.	• 시민연대협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관한 법률 공포
2000. 6. 15.	• 가족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조치 발표: 중증질환 아동을 위한 휴가 및 부모동반수당 신설, 수급자격 종료 부모교육수당 수혜자의 직장복귀지원(ARAF) 신설
2001. 12. 21.	• 2002년 「사회보장재정법」으로 아버지휴가 도입: 모든 근로자에게 열려 있으며, 아버지는 분할할 수 없는 최대 11일 동안 활동을 중단할 수 있음, 이 11일은 이미 노동자가 수급할 수 있는 3일과 합산될 수 있음
2003. 4. 29.	• 가족컨퍼런스 채택 주요 조치: 임신 7개월에 출산보너스 800유로 지급(출산 전 5개월 동일 금액의 보너스 대체), 3세 미만 아동에게 자산조사에 따라 지급되는 월 160유로의 기본수당 그리고 부모의 활동 수준과 보육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2가지 보조금인 활동중단보조금(complément "retrait d'activité")과 보육방식보조금(complément "mode de garde")으로 구성된 영유아보육혜택(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20,000개소 신설을 위한 어린이집 계획(plan crèches), 직원을 위한 투자(직장어린이집(crèches d'entreprises), 부모휴가 후 직장 복귀를 위한 교육연수) 총액의 최대 60%까지 회사에 부여되는 가족세액공제(crédit d'impôt famille), 비정규 보육사 승인 연장 및 지속적인 직업훈련 기금 조성

30) 가족·아동·고령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남녀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 토론을 주도하고 세대 간 접근 방식으로 가족, 아동기, 노년기, 고령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 및 복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공공 당국에 미래지향적이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음. HCFEA, *Les missions du HCFEA*(<https://www.hcfea.fr/>), 2024.4.23. 검색

프랑스 인구위기의 사회적 구성 및 가족정책의 시사점

일시	주요 내용
2005. 9.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미니크 드 빌팽(Dominique de Villepin) 총리 주재 마티뇽(Matignon) 가족컨퍼런스 채택 주요 조치: 새로운 부모휴가 신설, 보육 비용 세액공제 2배 확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할인 제공 새로운 다자녀가족카드 도입, 부모동반수당 개혁(2006년 4월 1일부터 아픈 자녀의 부모는 310일의 휴가를 갖게 되며, 4개월씩 두 번 갱신하는 대신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2006.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부장관(ministre de la Famille)이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 개발 및 다양화 조치를 포함한 영아기(petite enfance) 계획 발표: 이미 계획된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72,000개소 외에 5년간 40,000개소 추가 신설, 어린이집 감독 규칙 유연화, 3-9명 어린이를 수용하는 소형어린이집(micro-crèches) 승인, 소기업의 어린이집 신설 지원, 영유아기 부문 일자리 개발, 2007년부터 산모의 의사에 따라 16주 출산휴가를 출산전후로 나누어 사용(축소할 수 없는 출산 전 3주는 제외)
2008. 10.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료회의에서 전국가족위원회(Conférence nationale de la famille)와 인구및가족고등위원회(Haut Conseil de la population et de la famille)를 대체하는 가족고등위원회(Haut conseil de la famille)를 설립하는 명령을 발표(30일에 서명)
2008.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연대소득(RSA)을 보편화하고 통합정책을 개혁하는 법률 공포
2010.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사센터설립(création des maisons d'assistants maternels)에 관한 법률」 공포: 목적은 지역사회가 감당가능한 비용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여러 보육사를 한 장소에 모이게 하는 실험을 보편화하는 것임
2013.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지원에 관한 프라고나르 보고서가 총리에게 제출됨. 보고서는 가족정책에서 실행되는 사회적·재정적 혜택 체계를 분석함. 이는 2016년까지 전국가족수당금고(CNAF)의 균형 회복을 권고하고, 다양한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특히 소득에 따른 가족수당 조정)을 제안함
2013.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마르크 에로(Jean-Marc Ayrault) 총리가 가족고등위원회에 "가족정책 혁신" 조치를 발표함 • 사회보장 가족부문 적자(2012년 25억 유로) 감축, 영유아 보육 공급 확대, 부모 책임 분담 장려(부모휴가 수급자의 96.5%가 여성) • 특히, 가족계수(가구 내 부양 자녀 유무에 따른 세제 혜택) 상한을 "부양 자녀" 0.5 지분 당 2000 유로에서 1500 유로로 낮추고, 2014년 4월 1일부터 자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혜택 기본수당의 절반을 삭감함
2014. 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질환 자녀 부모휴가 부여 법」(loi permettant le don de jours de repos à un parent d'un enfant gravement malade) 공포
2014. 9.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사회보장재정법안(PLFSS) 발표에서 정부는 가족부문에 대한 의미있는 노력을 발표함. 가족혜택에서 7억 유로를 절감할 계획임. • 아버지 부모휴가 사용 비율 확대, 가장 부유한 가족의 경우 보육사 고용에 지급되는 보육방식보조금(CMG) 감액, 가족수당 인상 자격부여 연령 연기(14세에서 16세로), 둘째 아이부터는 출산/입양 보너스 감액(첫째는 923.08 유로, 다음부터는 각각 308 유로) 등이 포함됨
2014. 10.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는 수정을 거쳐 2015년 PLFSS를 첫 번째 독회에서 채택함. • 의원들은 출산보너스 및 14세 이상 가족혜택 증액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반면 소득에 따른 가족수당 조정을 의결함 • 2015년 7월 15일부터 가족수당은 월 소득이 6,000유로 이상인 두 자녀의 부모에게는 1/2로 월 소득이 8,000유로 이상인 부모에게는 1/4로 줄어들고, 소득 상한액은 추가 자녀 한 명당 500유로 인상될 예정임
2014. 1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수당 지급방식 개혁 2015년 「사회보장재정법」 관보 게재

III. 프랑스 가족정책의 전개과정

일시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은 자산에 따라 가족수당의 금액을 조정함. 2015년 7월에 발효되고, 그 동안 시행령을 통해 적용가능한 소득 상한액을 명시함
2016.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및가족고등위원회(HCPF)를 대체하여 가족·아동·고령고등위원회(Haut Conseil de la famille, de l'enfance et de l'âge, HCFEA)³⁰⁾가 설립됨
2017.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CS는 더 이상 법정이 아닌 시청에서 서명할 수 있음
2018. 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CNAF 이사회는 가족정책의 주요 목표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을 명시한 '2018~2022년 목표 및 관리 신 협약'(nouvelle convention d'objectifs et de gestion, COG)을 채택함 여기에는 2022년까지 어린이집 30,000개소 설립, 보육사 종계소 1,000개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수요일 레저센터 500,000개소와 사회센터 400개소가 포함됨
2018.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사회보장재정법」으로 영아가 출생 후 입원할 경우 아버지 휴가를 30일까지 연장함
2020. 1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사회보장재정법」에 포함된 가족정책 직접 관련 조항들: 2021년 7월 1일부터 아버지 및 영아돌봄 휴가가 의무 사용 7일을 포함해 28일로 연장. 입양 휴가는 무자녀 혹은 부양자녀가 1명인 가족의 경우 10주에서 16주로 연장. 출산보너스는 임신 6개월 이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

자료: Vie publique, *La politique de la famille depuis 1932: chronologie*(<https://www.vie-publique.fr/>), 2024.4.23. 검색

IV. 프랑스 가족정책의 체계 및 현황

1. 가족정책 체계

가. 가족정책의 정의 및 목표³¹⁾

프랑스 정부는 가족정책을 가족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에 드는 재정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지방 당국, 사회보장기관이 취하는 모든 조치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정책은 전통적인 두 가지의 목표와 최근 추가된 두 가지의 새로운 목표를 갖고 있다. 전통적인 목표는 (1)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 ‘세대 갱신에 기여’(contribuer au renouvellement des générations)하고, (2) 자녀의 출산과 교육으로 발생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활수준을 유지’(maintenir le niveau de vie des familles)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된 목표는 (3)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균형을 촉진’(favoriser l’articulation entre vie familiale et vie professionnelle)하고, (4) 자녀와의 관계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돕기 위해 ‘부모됨에 대한 지원을 제공’(apporter un soutien à la parentalité)하는 것이다.

요컨대, 프랑스 정부는 가족정책을 가족의 자녀 출산·양육 지원 조치로 정의하고, 그 목표를 세대 간 재생산 지원, 유자녀 가족의 생활수준 유지, 일·가정 양립 지원, 부모의 양육 지원 등 네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31) Vie publique, *Qu’est-ce qu’une politique familiale?*(<https://www.vie-publique.fr/>), 2024.5.30. 검색

나. 가족정책의 기능³²⁾

프랑스 정부는 가족정책의 기능을 상기 가족정책의 두 번째 목표인 가구 간 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설명한다. 자녀의 출산은 무자녀 가구에 비해 생활수준 저하를 초래하고, 이러한 생활수준 격차는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확대된다. 가족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재분배 메커니즘을 통해 그러한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하게 된다.

- 수평적 재분배(무자녀 가족에서 유자녀 가족으로)
- 수직적 재분배(부유한 가족에서 빈곤한 가족으로)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L'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가 2021년 발간한 「가계 소득과 자산」(Revenus et patrimoine des ménages)에 따르면, 2018년 자녀 출산 관련 비용으로 인해 유자녀 가구의 생활수준이 무자녀 가구에 비해 평균 10.4%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두 자녀 가족의 경우 15.7%, 세 자녀 이상 가족의 경우 31.5%로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감사원(L'Insp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과 사회감사원(L'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이 2021년 발간한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재정지출 검토』(Revue des dépenses socio-fiscales en faveur de la politique familiale)에 따르면, 가족정책의 결과로 생활수준 격차가 무자녀 가족과 한 자녀 가족 간에는 7%, 두 자녀 가족은 9%, 세 자녀 이상 가족은 17%까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이러한 가족정책의 효과는 계층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랐다. 저소득층 유자녀 가구(주로 한부모 가구와 다자녀 가족)는 소득 기준으로 수급하는 가족혜택progressivité de l'impôt sur le

32) Vie publique, *Dans quelle mesure la politique fiscale et les prestations sociales aident-elles les familles?*(<https://www.vie-publique.fr/>), 2024.5.31. 검색

revenu)의 수혜를 받았던 반면, 부유층은 가족계수와 세액공제로부터 수혜를 받았다. 이러한 가족정책 활용에서의 계층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이전(transferts sociaux)을 통한 재분배로 출산으로 인한 가족 간 생활수준 격차를 축소한다는 기대효과가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가족정책의 주요 조치³³⁾

가족 지원은 지원 방법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인 가족혜택

(1) 가족혜택³⁴⁾

가족혜택은 가족수당, 가족보조금, 가족부양수당, 출산/입양 보너스, 기본수당, 보육방식자유선택보조금, 자녀교육분담혜택, 장애아동교육수당, 일일부모동반수당, 신학기수당 등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재정지원이다. 이외에 사회적 최저 소득인 노동연대소득, 장애성인수당 등도 별도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가족혜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

33) Vie publique, *Les instruments de la politique familiale*(<https://www.vie-publique.fr/>), 2024.5.31. 검색

34) Vie publique, *Que sont l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vie-publique.fr/>), 2024.6.3. 검색

(2) 가족세제혜택³⁵⁾

가족세제혜택은 유자녀 가족에게 유리한 소득세 부과 조치로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소득세(l'impôt sur le revenu)를 가구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를 통해 가구의 기여 능력에 따라 과세 소득을 조정하는 것이다.

누진세는 납부 세액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세율이 가계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 유자녀 가족, 특히 사실상의 부양자가 한 명 뿐인 한부모가족에게 유리하다. 즉, 누진세는 그와 같은 가족 대부분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족계수는 과세 소득 산정에서 부양 자녀 수를 고려하는 메커니즘이다. 즉, 과세 소득은 총소득이 아니라 가족구성을 반영한 지분 수(un nombre de parts qui reflète la composition de la famille)로 나눈 소득이다. 동일 소득이라도 한 자녀 가족은 독신자나 무자녀 커플보다, 두 자녀 가족은 한 자녀 가족보다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게 된다. 즉, 다자녀 가족이 가족계수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

라.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³⁶⁾

가족혜택의 지급대상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실상의 모든 양육자이다.³⁷⁾ 즉, 수급 권리는 합법적, 자연적, 입양 또는 위탁 자녀에 대한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부양책임(의·식·주)이 있는 사람에게 있다.

35) Vie publique, *Quelles sont les mesures fiscales en faveur des familles?*(<https://www.vie-publique.fr/>), 2024.6.3. 검색

36) Cleiss, *L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cleiss.fr/>), 2024.6.4. 검색

37)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프랑스 거주 프랑스인 또는 외국인인 해당 자녀에 대한 가족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L. 512-1)

지급대상 연령은 직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월 순 급여가 순 최저임금(2024년 €1,082.87)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아동의 경우 20세까지가 일반 원칙(règle générale)이고, 주거수당 및 가족보조금은 21세까지이다.

가족혜택 지급금액은 2024년 4월 1일에 €466.44로 설정된 ‘가족수당 월 산정 기준’(base mensuel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BMAF)의 백분율로 표시된다. 이 기준은 담배를 제외한 연평균 소비자 물가 변동률 예측에 따라 매년 4월 1일에 재평가된다.³⁸⁾

마. 가족수당 조정³⁹⁾

가족정책의 핵심인 가족수당은 본래 보편적인 제도였다. 즉, 모든 가족은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부터 공적 개입을 하는 것은 가족정책의 출산주의적 전통의 일환이다. 즉, 모든 부모가 세대를 갱신하기 위해 여러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고,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수당 지급금액은 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했고, 자녀가 더 태어나면 증액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주의는 2015년부터 「사회보장재정법」(la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에 가족수당조정원칙(du principe de modulation des allocations familiales)이 도입됨으로써 약화된 상태에 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조정의 목적은 (1) 사회 정의와 (2) 사회보장 가족부문 적자 시기의 공공지출 통제를 위한 것이다. 전자는 가난한 가족에게는 지원 금액을 늘리고 부유한 가족에게는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가구에 지급되는 가족수당 금액을

38)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족혜택 지급금액의 체감 효과 저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39) Vie publique, *Que signifie la modulation des allocations familiales?*(<https://www.vie-publique.fr/>), 2024.4.2. 검색

연간 7억6천만€ 까지 절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정에 따라 여전히 모든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15년 7월 1일부터 가족수당 금액은 월 순소득이 €6,000를 초과하는 2자녀 가족의 경우 절반으로, €8,000를 초과하는 가족의 경우 4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이러한 소득 기준은 부양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자녀당 €500씩 상향된다.

2. 가족정책 현황

가. 가족혜택⁴⁰⁾

(1) 일반 부양 혜택

(가)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가족수당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두 번째 부양 자녀부터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나 개인의 자산(ressources)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자산은 N-2 연도의 순소득이 고려되고, 3개의 소득 구간이 있다.(앞 절의 ‘가족수당 조정’ 참고)

40) Cleiss, *L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cleiss.fr/>), 2024.6.10. 검색. 이하의 각 수당 금액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사회보장 부채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세금인 사회부채상환납부금(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RDS) 0.5% 공제 후의 금액임.

[표 6] 가족수당 금액

부양 자녀 수	월별 금액	BMF의 %
자녀 2명	€148.52	32%
자녀 3명	€338.80	73%
추가 자녀 1명당	€190.29	41%
14세 이상 증액*	€74.26	16%

주: ※ 자녀 2명 중 첫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자료: Cleis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cleiss.fr/>), 2024.6.10. 검색

(나) 정액수당(Allocation forfaitaire)

정액수당은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에서 자녀 중 한 명이 20세(지급대상 연령제한)에 도달하여 가족수당 일부를 상실하고 여전히 집에 거주하며 직업소득이 €1,082.87를 초과하지 않을 때 지급된다.

수급을 위해서는 20세가 되는 자녀를 포함하여 최소 3명의 자녀에 대해 가족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가족이어야 한다. 정액수당은 해당 자녀가 20세가 되는 달의 1일부터 21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1년간 지원된다.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자산(N-2 연도)이 고려된다. 다만 그 자산이 해당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상한선을 약간 초과하는 경우 역진적 보조금(*complément dégressif*)이 지급될 수 있다.

[표 7] 정액수당 금액

부양 자녀	월별 금액	BMF의 %
20세 자녀	€93.91	20.234%

자료: Cleis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cleiss.fr/>), 2024.6.10. 검색

(다)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

가족보조금은 3세 이상 21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에게 자산 조사

에 따라 지급된다. 소득 상한선(N-2 년도)은 부양 자녀 수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부양 자녀가 3명이든 그 이상이든 가족이 받는 가족보조금 금액은 동일하다.

[표 8] 가족보조금 금액

부양 자녀 수	소득이 2인인 커플	소득이 1인인 커플	월별 금액	BMF의 %
자녀 3명	€25,653 이하	€20,971 이하	€289.98	62.48%
	€25,653에서 €51,296 사이	€20,971에서 €41,933 사이	€193.30	41.65%
자녀 4명	€29,148 이하	€24,466 이하	€289.98	62.48%
	€29,148에서 €58,285 사이	€24,466에서 €48,922 사이	€193.30	41.65%

자료: Cleiss, *L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cleiss.fr/>), 2024.6.10. 검색

(라) 가족부양수당(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ASF)

가족부양수당은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른 부모가 양육비(pension alimentaire)를 미지급하는 경우 선지급될 수 있다. 수급 조건은 혼자 생활하고⁴¹⁾, 프랑스에 거주하고, 부양 자녀가 1명 이상이고, 자녀가 취업 중이면 월 순소득이 €1,082.87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9] 가족부양수당 금액

혜택 유형	월별 금액	BMF의 % ⁽²⁾
- 전액(자녀가 부모 모두의 고아거나 유사 상황인 경우) [*]	€261.06	56.25%
- 부분금액(자녀가 부나 모의 고아거나 유사 상황인 경우)	€195.86	42.20%

주: ※ 위탁아동(enfant recueilli) 양육자(혼자 생활하든 커플로 생활하든 무관)

자료: Cleiss, *L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cleiss.fr/>); République française,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ASF): enfant recueilli*(<https://www.service-public.fr/>), 2024.6.10. 검색

41) 커플로 생활하면 수당이 철회됨. République française,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parents séparés*(<https://www.service-public.fr/>), 2024.6.10. 검색

(2) 출산 및 보육 관련 혜택(Prestations liées à la naissance et à l'accueil de la petite enfance)

이 혜택은 2003년 다음의 4가지로 구성된 영유아보육혜택

(가) 출산/입양 보너스(Prime à la naissance ou à l'adoption)⁴²⁾

이 보너스는 임신 7개월째 혹은 입양 자녀가 가정에 도착했을 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된다. 소득 상한은 가족 상황과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된다. 가령 외벌이 커플의 경우 첫째 자녀는 € 34,791이고, 한부모 가족 또는 소득이 2인인 커플의 경우 첫째 자녀는 € 45,979이다. 이러한 상한은 자녀 수에 따라 증액된다.

[표 10] 출산/입양 보너스 금액

혜택 유형	금액	BMF의 %
출산보너스(임신 첫 14주 이내 신고)	€1,066.30	229.75%
입양보너스(20세 미만)	€2,132.58	459.50%

자료: Cleis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cleiss.fr/>), 2024.6.10. 검색

(나) 기본수당(Allocation de base)⁴³⁾

기본수당은 출산/입양 보너스 제공 이후에 지급된다. 출산의 경우 출산한 다음 달부터 3번째 생일 전월까지, 입양의 경우 자녀가 가정에 도착한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수당 지급 종료 전 아동이 20세가 되면 최대 36개월, 최소 12개월 동안

42) Aide-sociale.fr, *Prime de naissance CAF en 2024: combien allez-vous percevoir pour la naissance ou l'adoption de votre enfant?*(<https://www.aide-sociale.fr/>), 2024.7.8. 검색

43) Aide-sociale.fr, *Allocation de base PAJE: une aide de la CAF accordée lors de l'arrivée d'un enfant dans le foyer*(<https://www.aide-sociale.fr/>), 2024.6.10. 검색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자산조사 결과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전액(taux plein)과 부분금액(taux partiel)으로 나뉜다.

첫째 자녀의 경우 전액을 받기 위한 소득이 1인인 커플과 소득이 2인인 커플(혹은 한부모)의 소득 상한은 각각 €29,120, €38,483이다. 첫째 자녀의 경우 부분 금액을 받기 위한 소득이 1인인 커플과 소득이 2인인 커플(혹은 한부모)의 소득 상한은 각각 €34,791, €45,979이다. 이러한 상한은 자녀 수에 따라 증액된다.

[표 11] 기본수당 금액

혜택 유형	월별 금액	BMF의 %
- 전액(taux plein)	€193.30	41.65%
- 부분금액(taux partiel)	€96.66	20.825%

자료: Cleis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cleiss.fr/>), 2024.6.10. 검색

(다) 자녀교육분담혜택(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Pre ParE)⁴⁴⁾

자녀교육분담혜택은 자산조사 없이 지급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녀 출산의 경우 3세 미만 입양의 경우 20세 미만이어야 하고,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직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단축해야 하고, 첫째 자녀는 최근 2년간 둘째 자녀는 최근 4년간 셋째 자녀부터는 최근 5년간 최소 8분기의 노령보험(assurance vieillesse)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

부모휴가(congé parental) 기간 지급되는 자녀교육분담혜택 금액은 직업 활동을 중단했는지 혹은 단축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지급 기간은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다.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직업 활동

44) Aide-sociale.fr, *PreParE CAF: comment être indemnisé afin de cesser ou réduire son activité pour s'occuper d'un enfant?*(<https://www.aide-sociale.fr/>), 2024.6.10. 검색

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기간은 단축된다.

[표 12] 자녀교육분담혜택 금액

혜택 유형	월별 금액	BMF의 %
- 전액(taux plein)(근로 중단)	€448.42	96.62%
- 부분금액(taux partiel)(50% 이하 근로)	€289.89	62.46%
- 부분금액(50% 초과 80% 이하 근로)	€167.22	36.03%

자료: Cleis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cleiss.fr/>), 2024.6.10. 검색

[표 13] 자녀교육분담혜택 지급 기간

부양 자녀 수	커플 부모	한부모
1명	자녀의 첫 번째 생일까지 부모 각 6개월	자녀의 첫 번째 생일까지 12개월
2명	막내 자녀의 세 번째 생일까지 부모 각 24개월	막내 자녀의 세 번째 생일까지 36개월
3명 이상(기본)	막내 자녀의 세 번째 생일까지 부모 각 24개월	막내 자녀의 세 번째 생일까지 36개월
3명 이상(증액)*	막내 자녀의 첫 번째 생일까지 부모 각 8개월	막내 자녀의 첫 번째 생일까지 12개월

주: ※는 €732.98로 증액됨

자료: Aide-sociale.fr, *PreParE CAF: comment être indemnisé afin de cesser ou réduire son activité pour s'occuper d'un enfant?*(<https://www.aide-sociale.fr/>), 2024.6.10. 검색

(라) 보육방식자유선택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⁴⁵⁾

보육방식자유선택보조금은 직업 활동에 복귀한 부모가 6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월 16시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이때 보장되는 보육 유형은 (1) 모자보호센터(Protection Maternelle et

45) Aide-sociale.fr, *Le complément libre choix de mode de garde: Mettre son enfant à garder lors de la reprise d'activité*(<https://www.aide-sociale.fr/>), 2024.6.10. 검색

infantile, PMI)의 승인을 받은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 또는 재택돌보미(personne à domicile) 직접 이용(보수가 돌보는 아동 1인당 하루 총 €58.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보육사 또는 재택돌보미를 고용한 협회 또는 회사 이용, (3) 소규모 어린이집(micro-crèche) 또는 가족 어린이집(crèche familiale) 이용 등 세 가지가 있다.

지급금액은 가구의 자산, 자녀 수,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증액되고, 한부모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보조금이 모두 증액된다. 3~6세 아동의 경우 절반으로 감액된다.

[표 14] 보육방식자유선택보조금 금액*

혜택 유형	월별 금액	BMF의 %
- 직접 고용		
소득이 €22,809 이하인 경우	€529.28	114.04%
소득이 €22,809에서 €50,686 사이인 경우	€333.75	71.91%
소득이 €50,686 초과인 경우	€202.22	43.14%
-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를 고용하고 있는 협회/회사		
소득이 €22,809 이하인 경우	€800.92	172.57%
소득이 €22,809에서 €50,686 사이인 경우	€667.44	143.81%
소득이 €50,686 초과인 경우	€533.96	115.05%
- 소규모 어린이집(micro-crèche)을 운영하는 협회/회사		
소득이 €22,809 이하인 경우	€967.81	208.53%
소득이 €22,809에서 €50,686 사이인 경우	€834.28	179.76%
소득이 €50,686 초과인 경우	€700.80	151%

주: ※는 3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한 명인 커플의 경우임

자료: Cleis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cleiss.fr/>), 2024.6.10. 검색

(3) 특수 할당 혜택(les prestations à affectation spéciale)

(가) 장애아동교육수당(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AEEH)

장애아동교육수당은 영구 장애율이 ㉠ 80% 이상 혹은 ㉡ 아동이 전문시설에 배치되거나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 50%에서 79% 사이인 20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수당의 기본 금액은 월 € 149.26이다. 장애가 80% 이상인 아동은 수당 보조금(complément AEEH)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도움의 필요나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보조금 액수는 ‘장애인 권리 및 자립 위원회’(la Commission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ées, CDAPH)가 아동의 돌봄 필요성, 돌봄 비용, 장애로 인한 재정적 결과,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돌보기 위한 직업 활동의 단축 혹은 중단 여부, 마지막으로 유급의 제3자 사용 등을 고려하는 평가표를 통해 정하는 6가지 범주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홀로 실제적이고 영구적으로 돌봄을 책임지는 수급자는 한부모 인상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첫째 범주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자녀의 상태 때문에 한부모가 직업 활동을 중단 혹은 단축하거나 유급 제3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된다.

‘장애인 권리 및 자립 위원회’가 설정하는 지급기간은 아동의 장애 정도가 ㉠ 80% 이상이면 3~5년, ㉡ 50%에서 79% 사이이면 2~5년이고, 특정 조건에서는 무제한으로 부여될 수 있다.

[표 15] 장애아동교육수당 금액

혜택 유형	월별 금액	BMF의 %
- 기본	€149.26	32%
- 첫째 범주 보조금	€111.95	24%
- 둘째 범주 보조금	€303.19	65%
한부모 증액	€60.64	13%

혜택 유형	월별 금액	BMF의 %
- 셋째 범주 보조금 한부모 증액	€429.12 €83.96	92% 18%
- 넷째 범주 보조금 한부모 증액	€665.00 €265.87	142.57% 57%
- 다섯째 범주 보조금 한부모 증액	€849.90 €340.50	182.21% 73%
- 여섯째 범주 보조금(제3자 지원) 한부모 증액	€1,266.60 €499.09	- 107%

자료: Cleis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cleiss.fr/>), 2024.6.10. 검색

(나) 장애성인수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

장애성인수당은 연금(노령, 장애) 또는 월 € 1,016.05(장애성인수당의 최대 금액) 이상의 산재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장애인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연대(solidarité) 수당이다.

혜택을 수급하려면 20세 이상이고, ‘장애인 권리 및 자립 위원회’가 결정한 장애 등급이 80% 이상이거나 50~79%(CDAPH가 인정하는 고용 접근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제약 有)인 경우이며, 연간 소득(N-2년)이 € 12,19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 상한은 부양 자녀 1명당 € 6,096씩 증액된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장애성인수당 분리’(Déconjugalisation de l’AAH)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은 고려되지 않는다.

2024년 4월 1일부터 최대 지급 금액은 월 € 1,016.05이고, 연금 수령자는 연금 금액과 최대 AAH 금액 간의 차액을 수령한다. 수급기간은 장애 정도가 80% 이상이면 1~10년, 50~79%인 경우 1~5년이고, 특정 조건에서는 무제한으로 부여될 수 있다.

(다) 신학기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이 수당은 학교에 다니는 6~18세 아동이 있는 특정 상한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 또는 개인에게 지급되고, 8월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소득(N-2년) 상한은 자녀 1명 €27,141이고, 추가 자녀당 €6,263씩 증액된다.

가구의 소득이 상한 미만인 경우 전액이 지급되고, 상한보다 약간 높을 경우 차등 지급된다. 또한 수당 금액은 가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지출을 최대한 근접하도록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표 16] 신학기수당 금액

혜택 유형	금액	BMF의 % ⁽²⁾
- 6~10세 자녀 1인당	€416.40	89.72%
- 11~14세 자녀 1인당	€439.38	94.67%
- 15~18세 자녀 1인당	€454.60	97.95%

자료: Cleis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cleiss.fr/>), 2024.6.10. 검색

(라) 일일부모동반수당(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AJPP)

일일부모동반수당은 부모가 곁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심각한 질병, 장애, 사고 피해가 있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 수당을 받으려면 일시적으로 직업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람이 자녀의 주치의로부터 진단서를 받고, 휴가 최소 15일 전에 고용주에게 진단서가 첨부된 부모동반휴가(congé de présence parentale) 서면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⁴⁶⁾

이 수당은 일일 혹은 반일 휴가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2일까지 지급된다. 자녀의 동반 지원 필요에 따라 3년간 310일의 보상휴가(congés indemnisés) 크레딧을

46) Aide-sociale.fr, *Congé de présence parentale: quelles sont les conditions et comment en faire la demande?*(<https://www.aide-sociale.fr/>), 2024.6.10. 검색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자녀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월 €126.20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비용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족의 소득(N-2년)에 특정 상한이 있다. 이 상한은 자녀 수가 증가할 때 그리고 소득 2인인 커플(또는 한부모)일 때 증액된다.⁴⁷⁾

[표 17] 일일부모동반수당 금액

혜택 유형	월별 금액	BMF의 %
- 일일	€64.54	-
- 반일	€32.27	-
- 비용보조금	€126.20	27.19%

자료: Cleis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cleiss.fr/>), 2024.6.10. 검색

(마) 자녀사망수당(Décès d'un enfant)

실질적이고 영구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된다. 임신 20주부터 그리고 25세 미만 자녀가 사망한 경우가 해당된다. 수당 금액은 사망 시점 부모 소득(N-2)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자녀가 1명인 경우 €93,676 미만이면 최대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면 최소 금액을 지급한다.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표 18] 자녀사망수당 금액

혜택 유형	금액	BMF의 %
- 최대 금액	€2,251.16	485.05%
- 최소 금액	€1,125.61	242.53%

자료: Cleis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cleiss.fr/>), 2024.6.10. 검색

47) Aide-sociale.fr, *L'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ou AJPP: Conditions et montant de l'aide*(<https://www.aide-sociale.fr/>), 2024.6.10. 검색

(4) 기타

(가) 이사보너스(prime de déménagement)

이사보너스는 특정 조건에 따라, 가구가 커질 때 이사하는 다자녀가족에게 지급된다. 즉, 출산 혹은 출산 예정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임신 3개월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막내 자녀의 2번째 생일 전 달 말일 사이에 이사하고, 개인주거지원(l'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 또는 가족주거수당(l'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 Alf) 수급자격⁴⁸⁾이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보너스 금액은 부양 자녀 3명에 대해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이사 비용과 동일하고, 추가 자녀 1명당 보조금(supplément)이 지급된다.

[표 19] 이사보너스 금액

혜택 유형	금액	BMF의 %
- 자녀 3명	€1,119.46	240%
- 셋째 초과 자녀 1인당	€93.29	20%

자료: Cleis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cleiss.fr/>), 2024.6.10. 검색

(나) 노동연대소득(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⁴⁹⁾

노동연대소득은 고용과 직업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이다. 이 혜택은 프레카리테(*précarité*)⁵⁰⁾ 계층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8) 자산조사 등 다양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Aide-sociale.fr, Conditions d'attribution de l'APL: Qui a le droit aux APL? Allez-vous en bénéficier?(<https://www.aide-sociale.fr/>), 2024.7.8. 검색; Service-Public.fr, 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https://www.service-public.fr/>), 2024.6.10. 검색

49) Aide-sociale.fr, RSA: comment l'obtenir? Combien allez-vous percevoir chaque mois? Où faire votre demande? Suivez le guide(<https://www.aide-sociale.fr/>), 2024.6.10. 검색

50) 고용, 주거, 의료, 교육, 가족 등에서 복합적인 불안정 상태에 있는 계층을 말함

이는 2008년 사회통합최저소득(RMI)을 대체하여 도입된 이래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여러 차례의 개혁을 거쳤다.⁵¹⁾ 특히 2024년에는 「완전고용법」(loi pour le plein emploi)에 따라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목표는 근로 인구를 늘리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를 수반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시행될 예정이다.

- 구직자 목록에 RSA 수급자 자동 등록(동거인, 배우자, Pacs 파트너 포함)
- 새로운 약정 체결: 수급은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하고, 이는 수급자는 물론 그의 관계자에게도 적용됨
- 주당 최소 15시간의 근로 의무

수급 연령은 최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일 기준 3년간 최소 2년의 전일제(약 3,214시간) 근로를 했거나, 출산 혹은 출산 예정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인 경우 18~24세의 청년도 받을 수 있다.

노동연대소득 금액은 가족구성과 가구자산에 따라 달라진다. 즉, 독신 혹은 커플, 부양 자녀 유무, 주거지원(APL) 수령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에서 가구자산을 차감한 액수이다.

- RSA 금액 = 정액(montant forfaitaire) - 가구자산

51) RMI는 수급자수 증가, 노동인센티브 저하, 노동시장 진출로 수급자격 상실시 기존 관련 혜택 박탈 등으로 비판받아 왔음. RSA는 RMI의 급여 구조를 개선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임. 그럼에도 수급자들의 빈곤 탈출이나 노동시장 재진입의 효과는 미미했던 반면 재정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했다는 인식하에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2024년 개혁이 이루어졌음. 김진리, 「프랑스 적극적연대급여 RSA의 개혁 계획과 근거」,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 겨울호 Vol.23, pp.134~140.

자녀는 거주지와 소득에 따라 25세까지 부양가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고려되는 자산은 수급 신청 전 3개월 동안 가구가 받은 전체 소득이다.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자산소득, 각종 혜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되고, 커플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conjoint)의 자산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장애보상혜택

[표 20] 노동연대소득 정액

가구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APL 미수령 싱글	€635,70	€953,56	€1.144,27	€1.398,55
APL 수령 싱글	€559,42	€800,99	€955,47	€1.209,75
APL 미수령 커플	€953,56	€1.144,27	€1.334,98	€1.589,26
APL 수령 커플	€800,99	€955,47	€1.146,18	€1.400,46

주: 자녀가 3명을 초과하면 추가 자녀당 €254.28를 받음

자료: Aide-sociale.fr, *RSA: comment l'obtenir? Combien allez-vous percevoir chaque mois? Où faire votre demande? Suivez le guide*(<https://www.aide-sociale.fr/>), 2024.6.10. 검색

나. 가족세제혜택

(1) 누진세

세금 산정에는 누진적 과표(Barème progressif)가 사용된다. 각각 0%에서 45%까지 다양한 세율에 해당하는 여러 소득 구간이 있다.

[표 21] 2023년 소득 적용 누진세 과표*

소득 구간	세율
€11,294 이하	0%
€11,295 ~ €28,797	11%
€28,798 ~ €82,341	30%
€82,342 ~ €177,106	41%
€177,106 이상	45%

주: ※ 과표는 매년 정해짐. 2024년(2023년 소득에 적용) 과표는 2024년 「재정법」(loi de finances)에 의해 설정됨

자료: Service-Public.fr, *Quel est le barème de l'impôt sur le revenu?*(<https://www.service-public.fr/>), 2024.7.8. 검색

(2) 가족계수⁵²⁾

과세 소득에 과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족계수를 고려해야 한다. 즉, 과세 소득을 납세자의 가족 상황(미혼, 기혼, 기타)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지분 수로 나눈다. 부모에게 부여된 과세 지분수는 2이고, 자녀당 1/2이 더해지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에게는 추가로 1/2이 더해진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부양 자녀가 없는 미혼, 이혼, 사별의 경우 1 지분 수를 부여받음
- 부양 자녀가 없는 기혼, Pacs의 경우 2 지분 수를 부여받음
-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지분수를 부여받음
- 장애인이거나 퇴역 군인인 경우에도 추가 지분 수를 부여받을 수 있음

52) Aide-sociale.fr, *Comment est effectué le calcul du quotient familial? A quoi sert-il? Quelles sont les aides CAF qui en dépendent?*(<https://www.aide-sociale.fr/>); Economie.gouv.fr, *Quotient familial et impôt sur le revenu: comment ça marche?*(<https://www.economie.gouv.fr/>), 2024.7.8. 검색

[표 22] 가족 상황에 따른 과세 지분수(Nombre de parts fiscales)

가족 상황	과세 지분 수
부양 자녀가 없는 미혼, 이혼, 사별의 경우	1
부양 자녀가 없는 기혼의 경우	2
부양 자녀가 1명인 미혼, 이혼의 경우	1.5
부양 자녀가 1명인 기혼, 사별의 경우	2.5
부양 자녀가 2명인 미혼, 이혼의 경우	2
부양 자녀가 2명인 기혼, 사별의 경우	3
부양 자녀가 3명인 미혼, 이혼의 경우	3
부양 자녀가 3명인 기혼, 사별의 경우	4
부양 자녀가 4명인 미혼, 이혼의 경우	4
부양 자녀가 4명인 기혼, 사별의 경우	5
부양 자녀가 5명인 미혼, 이혼의 경우	5
부양 자녀가 5명인 기혼, 사별의 경우	6

자료: Economie.gouv.fr, *Quotient familial et impôt sur le revenu: comment ça marche*?(<https://www.economie.gouv.fr/>), 2024.7.8. 검색

(3) 세액 조정⁵³⁾

(가) 가족계수 상한(Plafonnement du quotient familial)

가족계수의 세제혜택은 신고소득 수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각각의 추가적인 ½ 지분수마다 최대 혜택 상한이 있다. 즉, 가족계수에 따른 세금감면은 추가 ½ 지분수 당 €1,759의 상한이 있다.

53) *Minist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 Comment calculer votre impôt d'après le barème de l'impôt sur le revenu?*(<https://www.economie.gouv.fr/>), 2024.7.8. 검색

(나) 저소득 감면(Décote pour les revenus modestes)

감면은 저소득 과세 대상 가구가 납부하는 세액을 낮추는 체계이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2023년 세금 신고 기준) 총소득세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미혼, 이혼 또는 사별자는 €1,929
- 합산 과세 대상인 기혼 커플은 €3,191

감면액은 정액 금액(독신은 €873, 커플은 €1,444)에서 45.25%의 세율이 적용된 총세액을 감한 금액이다.

(다) 고소득 납부금(contribution sur les hauts revenus)

고소득의 경우, 특별(exceptionnelle) 납부금이 소득세에 추가된다. 이는 기준 과세소득이 다음을 초과하는 가구에 적용된다.

- 독신, 사별, 별거나 이혼의 경우 €250,000
- 기혼 또는 Pacs이고 공동과세 대상인 경우 €500,000

이 세율은 가구 상황과 소득 그리고 누진적 과표에 따라 달라진다.

[표 23] 고소득 납부금(La contribution sur les hauts revenus)

기준 과세소득	독신 세율	커플 세율
€250,000 이하	0 %	0 %
€250,001~€500,000	3 %	0 %
€500,001~€1,000,000	4 %	3 %
€1,000,000 초과	4 %	4 %

자료: *Minist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 Comment calculer votre impôt d'après le barème de l'impôt sur le revenu?* (<https://www.economie.gouv.fr/>), 2024.7.8. 검색

(4) 소득세 계산 예시⁵⁴⁾

소득세 금액은 순 과세 소득(revenu net imposable)에서 3단계로 계산된다.

- 순 과세 소득을 가족계수로 나눔
- 이 결과에 해당 연도 소득에 적용되는 누진세 과표를 적용함
- 결과에 가족계수를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구함
 - ◆ 세액이 저소득 감면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면액을 산출하여 제함

□ 2023년 순 과세 소득이 €32,000인 독신자 사례

- 독신자는 1 지분수를 갖고 있으므로 과세 소득은 €32,000(€32,000/1)이 됨
 - 과세 소득은 3개의 소득 구간이 해당되므로 각각에 적용하여 합산함
 - ◆ $(€11,294 \times 0\%) + ((28,797 - 11,294) \times 11\%) + ((32,000 - 28,797) \times 30\%) = 0 + 1,925.33 + 960.90 = €2,886.23$
 - 독신자는 지분 수가 1이므로 상기 결과에 1을 곱함
 - ◆ 소득세는 €2,886.23 x 1 = €2,886.23임

□ 2023년 순 과세 소득이 €55,950이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커플(기혼 또는 Pacs) 사례

- 커플은 3 지분수(커플 2, 각 자녀 1/2)를 갖고 있으므로 과세 소득은 €18,650 (€55,950/3)이 됨
 - 이 과세 소득은 두 개 소득 구간이 해당되므로 각각에 적용하여 합산함
 - ◆ $(€11,294 \times 0\%) + ((18,650 - 11,294) \times 11\%) = €809.16$
 - 이 가족은 지분수가 3이므로 상기 결과에 3을 곱함
 - ◆ 따라서 커플의 소득세는 €809.16 x 3 = €2,427.48임
 - 소득세 금액이 €3,191의 기준점 미만이므로 다음과 같이 감면액(décote)을 산출함
 - ◆ $1,444 - (2,427.48 \times 45.25\%) = 1,444 - 1,098 = €346$
- 감면 적용 후 소득세는 2,427.48 - 346 = €2,081.48임

54) *Minist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 Comment calculer votre impôt d'après le barème de l'impôt sur le revenu?* (<https://www.economie.gouv.fr/>), 2024.7.8. 검색

다. 가족정책 평가⁵⁵⁾

이상 한 세기 이상의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던 프랑스 가족정책의 지출 규모는 어느 국가 비해서도 큰 상태에 있다. 2010~2019년간 프랑스의 GDP 대비 가족혜택 공공지출 비중 추이를 보면, 2015년 가족수당 조정 개혁으로 3% 후반대에서 3% 중반대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3.44%로 OECD 38개국 중 1위였고, EU 평균 2.56%와 OECD 평균 2.29%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표 24] OECD 국가별 GDP 대비 가족혜택 공공지출 비중 추이(2010-2019)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프랑스	3.64	3.67	..	3.73	3.74	3.70	3.61	3.59	3.51	3.44
스웨덴	3.37	3.37	3.49	3.54	3.54	3.46	3.49	3.38	3.46	3.42
룩셈부르크	3.73	3.43	3.43	3.42	3.32	3.24	3.15	3.22	3.30	3.36
폴란드	1.75	1.67	1.72	1.79	1.83	1.93	2.94	2.98	2.85	3.35
에스토니아	2.82	2.46	2.26	2.13	2.50	2.99	3.09	2.99	3.25	3.34
아이슬란드	3.52	3.27	3.35	3.43	3.52	3.28	3.19	3.22	3.31	3.34
덴마크	3.89	3.92	3.80	3.73	3.62	3.52	3.48	3.40	3.37	3.31
노르웨이	3.26	3.22	3.16	3.20	3.28	3.39	3.48	3.35	3.16	3.28
독일	3.07	2.98	3.01	3.06	3.05	3.10	3.14	3.15	3.20	3.24
벨기에	3.28	3.31	3.25	3.31	3.28	3.19	3.15	3.16	3.13	3.18
헝가리	3.40	3.79	3.69	3.58	3.56	3.38	3.38	3.31	3.22	3.09
핀란드	3.10	3.07	3.17	3.20	3.16	3.09	3.00	2.86	2.87	2.89
뉴질랜드	3.72	3.61	3.42	3.02	2.89	2.78	2.67	2.42	2.59	2.65
EU										2.56
오스트리아	2.99	2.74	2.68	2.70	2.66	2.70	2.68	2.64	2.58	2.54
영국	4.25	4.10	4.03	3.77	3.60	3.54	3.41	3.31	3.08	2.49
이스라엘	2.15	2.03	2.09	2.21	2.08	2.09	2.13	2.59	2.48	2.46

55) Vie publique, *La politique familiale a-t-elle une incidence sur la natalité?*(<https://www.vie-publique.fr/>), 2024.6.3. 검색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리투아니아	1.93	2.08	2.27	2.46
호주	2.60	2.61	2.78	2.71	2.76	2.68	2.42	2.32	2.23	2.34
OECD										2.29
라트비아	2.14	1.78	1.62	1.82	1.95	2.19	2.26	2.26	2.25	2.27
스위스	1.82	1.81	1.98	1.99	2.04	2.22	2.21	2.24	2.20	2.22
슬로바키아	1.95	1.99	2.02	2.05	2.03	1.95	1.99	2.02	1.96	2.14
체코	2.29	2.12	2.19	2.18	2.08	2.01	2.01	2.02	2.13	2.13
일본	..	1.51	1.35	1.35	1.39	1.61	1.67	1.76	1.82	1.95
캐나다	1.46	1.42	1.43	1.39	1.45	1.77	1.84	1.77	1.77	1.87
이탈리아	1.78	1.79	1.85	1.97	1.95	1.93	1.89	1.89	1.89	1.87
네덜란드	..	1.97	1.76	1.83	1.84	1.83	1.86
슬로베니아	2.12	2.13	2.06	1.93	1.85	1.78	1.72	1.85	1.81	1.81
그리스	0.98	1.02	1.18	1.33	1.38	1.29	1.27	1.66	1.88	1.77
칠레	1.49	1.31	1.37	1.42	1.54	1.72	1.81	1.79	1.75	1.76
콜롬비아	1.40	1.22	1.50	1.75	1.82	1.96	1.76	1.66	1.67	1.75
아일랜드	3.54	3.34	3.27	3.04	2.74	2.05	2.02	1.91	1.80	1.70
포르투갈	1.58	1.40	1.43	1.47	1.45	1.51	1.72	1.70	1.67	1.68
한국	0.88	0.87	1.02	1.33	1.31	1.35	1.31	1.30	1.37	1.56
스페인	1.55	1.47	1.44	1.45	1.41	1.38	1.34	1.34	1.43	1.48
미국	1.22	1.18	1.14	1.10	1.13	1.12	1.11	1.07	0.84	1.04
코스타리카	0.00	0.92	0.89	1.03	1.01	1.05	1.06	1.03	0.96	1.02
멕시코	1.04	1.00	0.99	0.99	0.97	1.03	1.03	0.88	0.81	0.63
튀르키예	0.32	0.33	0.35	0.38	0.37	0.38	0.48	0.49	0.46	0.54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4.7.23. 검색

그렇다면 이와 같은 프랑스 가족정책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우선 가족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용이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 가족 및 사회재정 등 다면적인 정책 조치의 복합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글로벌한 연구의 부족

- 정책 결정과 그것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간의 시차로 인한 평가의 어려움. 실제로 커플이 자녀를 갖기로 하는 결정은 복수의 요인(자녀에 대한 욕구, 커플의 안정성, 취업, 주거 등)이 작용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그러한 요인들의 결합은 다소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복잡하게 함
- 출산 지원 정책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재정, 가족, 경제, 주택, 교육 등)의 공공개입 정책에 속함. 따라서 정책이 명확하지 않고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평가하기가 어려움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평가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이 유럽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데 가족정책이 하나의 전체로서 기여했음을 주목해야 함을 지적한다. 즉, 2012~2021년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OECD 38개국 중 이스라엘, 멕시코, 튀르키예에 이어 3위 수준이었고, OECD 평균 및 EU 평균에 비해 줄곧 0.2명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며 현저히 높았다.

[표 25] OECD 국가별 합계출산율 추이(2012-2021)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이스라엘	3.05	3.03	3.08	3.09	3.11	3.11	3.09	3.01	2.90	3.00
체코	1.45	1.46	1.53	1.57	1.63	1.69	1.71	1.71	1.71	1.83
멕시코	2.29	2.27	2.21	2.14	2.09	2.04	2.00	1.92	1.91	1.82
아이슬란드	2.04	1.93	1.93	1.81	1.75	1.71	1.71	1.75	1.72	1.82
프랑스	1.99	1.97	1.97	1.93	1.89	1.86	1.84	1.83	1.79	1.80
덴마크	1.73	1.67	1.69	1.71	1.79	1.75	1.73	1.70	1.67	1.72
아일랜드	1.98	1.93	1.89	1.85	1.82	1.78	1.75	1.70	1.63	1.72
콜롬비아	1.93	1.91	1.88	1.86	1.84	1.82	1.79	1.77	1.74	1.72
튀르키예	2.11	2.11	2.18	2.15	2.11	2.07	1.99	1.88	1.76	1.70

프랑스 인구위기의 사회적 구성 및 가족정책의 시사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호주	1.93	1.88	1.79	1.79	1.79	1.74	1.74	1.67	1.59	1.70
스웨덴	1.91	1.89	1.88	1.85	1.85	1.78	1.75	1.70	1.66	1.67
미국	1.88	1.86	1.86	1.84	1.82	1.77	1.73	1.71	1.64	1.66
뉴질랜드	2.10	2.01	1.92	1.99	1.87	1.81	1.71	1.72	1.61	1.64
슬로베니아	1.58	1.55	1.58	1.57	1.58	1.62	1.60	1.61	1.59	1.64
슬로바키아	1.34	1.34	1.37	1.40	1.48	1.52	1.54	1.57	1.59	1.63
네덜란드	1.72	1.68	1.71	1.66	1.66	1.62	1.59	1.57	1.54	1.62
에스토니아	1.56	1.52	1.54	1.58	1.60	1.59	1.67	1.66	1.58	1.61
벨기에	1.80	1.76	1.74	1.70	1.68	1.65	1.62	1.60	1.55	1.60
헝가리	1.34	1.34	1.41	1.44	1.49	1.49	1.49	1.49	1.56	1.59
OECD 평균	1.71	1.68	1.69	1.68	1.68	1.65	1.63	1.60	1.56	1.58
독일	1.41	1.42	1.47	1.50	1.59	1.57	1.57	1.54	1.53	1.58
라트비아	1.44	1.52	1.65	1.70	1.74	1.69	1.60	1.61	1.55	1.57
노르웨이	1.85	1.78	1.76	1.73	1.71	1.62	1.56	1.53	1.48	1.55
칠레	1.80	1.79	1.77	1.74	1.68	1.60	1.56	1.55	1.54	1.54
코스타리카	1.88	1.84	1.82	1.79	1.75	1.74	1.71	1.63	1.56	1.53
영국	1.92	1.83	1.81	1.80	1.79	1.74	1.68	1.63	1.56	1.53
EU-27 평균	1.54	1.51	1.54	1.54	1.56	1.55	1.54	1.52	1.50	1.53
스위스	1.53	1.52	1.54	1.54	1.54	1.52	1.52	1.48	1.46	1.51
오스트리아	1.44	1.44	1.46	1.49	1.53	1.52	1.48	1.46	1.44	1.48
핀란드	1.80	1.75	1.71	1.65	1.57	1.49	1.41	1.35	1.37	1.46
캐나다	1.63	1.61	1.61	1.60	1.59	1.55	1.51	1.47	1.41	1.43
그리스	1.34	1.29	1.30	1.33	1.38	1.35	1.35	1.34	1.39	1.43
룩셈부르크	1.57	1.55	1.50	1.47	1.41	1.39	1.38	1.34	1.36	1.38
리투아니아	1.60	1.59	1.63	1.70	1.69	1.63	1.63	1.61	1.48	1.36
포르투갈	1.29	1.21	1.23	1.31	1.36	1.38	1.42	1.43	1.41	1.35
폴란드	1.30	1.26	1.29	1.29	1.36	1.45	1.44	1.42	1.39	1.33
일본	1.41	1.43	1.42	1.45	1.44	1.43	1.42	1.36	1.33	1.30
이탈리아	1.42	1.39	1.38	1.36	1.36	1.34	1.31	1.27	1.24	1.25
스페인	1.32	1.27	1.32	1.33	1.34	1.31	1.26	1.23	1.19	1.19
한국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81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4.7.23. 검색

요컨대 프랑스 정부는 가족정책의 평가 그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작업이라 하더라도 유럽국 대비 합계출산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근거 위에서 가족지원의 총체적 효과를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프랑스가 인구위기를 주변 경쟁국과의 비교라는 측면에서 규정했던 논리를 가족정책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V. 한국의 인구위기 대응에 대한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프랑스 인구위기의 사회적 구성과 가족정책의 기원, 전개과정, 체계 및 현황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전환기 프랑스에서 인구위기가 사회적 의제가 된 것은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아니라 주변 경쟁국과의 비교에서 나왔다. 즉, 인구위기는 국제관계를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치현실주의에서 국가의 생존위기 혹은 안보위기로 정의되었다.

둘째, 이 시기의 인구 담론은 ‘출산 과업’으로 대표되는 산아제한론과 ‘국가 자살’을 경고하는 인구증가론이 대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논리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은 고용주, 지식인과 개혁가, 가족단체, 여성단체 등과 같은 민간의 자발적인 적극적 활동에 따라 아동, 여성, 가족을 보호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통해 출산을 높일 수 있다는 가족보호 담론으로 수렴되었다.

셋째, 이와 같은 인구위기의 사회적 의제화와 가족 보호 담론의 등장으로 1909년 모성 보호에 관한 「앵제랑법」, 1913년 가족수당의 시작인 「빈곤다자녀가족지원법」, 1920년대의 다자녀가족을 위한 다수의 입법들로 이어져 가족정책의 원형이 마련되었다.

넷째,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추가임금 제공을 일반화한 1932년 「랑드리법」과 친출산주의적 목표를 명시한 1939년 「가족 및 출산 법」을 시작으로 이후 90여 년에 걸쳐 사회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즉, 1960년대 중반부터는 전업주부에서 워킹맘으로의 전환으로 대표되는 가족모델의 변화, 1980년대부터는 경제성장 둔화로 심화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대응, 21세기 전환기부터는 수직적 형평성 제고 및 재정부담 완화 등의 정책담론 지형의 변화 속에서도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가족의 필요에

다른 제도 신설, 사각지대 해소, 통합과 재편, 가족수당 조정 등을 통해 확대와 개혁을 지속하고 있다.

다섯째, 이상의 발전과정의 결과물인 현행 가족정책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가족정책의 정의, 목표, 기능, 주요 조치, 정책대상 및 지급금액 산정 방식, 2015년 개혁에 따른 가족수당 조정 등의 측면에서 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정책수요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즉, 가족정책을 자녀의 출산·양육 지원 조치로 정의하고, 그 목표를 세대 간 재생산 지원 및 유자녀 가족의 생활수준 유지에 두고, 그 기능을 수평적·수직적 소득 재분배 메커니즘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유자녀 가족의 생활수준 저하를 줄이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위한 가족정책의 주요 조치를 가족혜택과 가족세제혜택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정책대상을 20세까지의 아동으로, 지급금액은 매년 재평가되는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가족수당 월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있음을 공표하고 있다. 끝으로 21세기 전환기를 거치면서 오랜 논쟁 끝에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가족부문 적자 완화를 위한 2015년 가족수당조정원칙도 소개하고 있다.

여섯째, 2024년 현재 가족혜택에는 가족수당, 정액수당, 가족보조금, 가족부양수당으로 구성된 일반 부양 혜택, 출산/입양 보너스, 기본수당, 자녀교육분담혜택, 보육방식자유선택보조금으로 구성된 영유아기 출산·보육 관련 혜택, 장애아동교육수당, 장애성인수당, 신학기수당, 일일부모동반수당, 자녀사망수당으로 구성된 취약계층 특수 할당 혜택, 기타 이사보너스와 노동연대소득 등이 있다. 가족세제혜택에는 누진세, 가족계수, 세액조정 등이 있다. 이러한 가족정책은 정교한 재분배 메커니즘을 통해 가구 간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곱째, 한 세기 이상의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던 프랑스 가족정책의 규모는 그 어느 국가 비해서도 큰 상태에 있다. 2019년 기준 프랑스의 GDP 대비 가족혜택 공공지출 비중은 3.44%로 OECD 38개국 중 1위였고, EU 평균 2.56%와 OECD 평균 2.29%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가족정책이 프

랑스의 합계출산율을 유럽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2012~2021년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및 EU 평균에 비해 줄곧 0.2명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며 현저히 높았다. 요컨대, 프랑스 사회가 인구위기를 주변 경쟁국과의 비교하에서 정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정부 역시 유럽국 대비 합계출산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실증적인 근거 위에서 가족정책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 인구위기의 사회적 구성과 가족정책이 향후 한국사회가 인구위기 대응의 전환점을 모색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위기의 사회적 의제화라는 측면에서 프랑스 사회가 인구위기를 주변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가의 생존위기 혹은 안보위기로 규정했던 것은 한국 정부가 제1차~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인구위기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노년 인구 급증에 따른 부양비 부담 증가, 주택·교육 시장의 수요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등과 같은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대비는 인구위기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2017년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집단자살(collective suicide)⁵⁶⁾ 사회로 진단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에버슈타트(Nicholas Eberstadt)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교수가 한국의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⁵⁷⁾를 예견하고 있듯이, 외부의 시선에 서조차 한국의 생존위기라는 평가가 거듭되고 있는 만큼 인구위기가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 유지의 문제를 넘어서는 국가의 존속과 안보에 관한 사안이라는 관

56) 한국경제, ‘라가르드 IMF 총재의 경고...’한국은 집단적 자살사회 같다”, 2017.10.24.

57) Nicholas Eberstadt, *East Asia's Coming Population Collapse And How It Will Reshape World Politics*(<https://www.foreignaffairs.com/>), Foreign Affairs, 2024.5.8.

점과 근본적인 대응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프랑스는 ‘출산 파업’으로 대표되는 산아제한론과 ‘국가 자살’을 경고하는 인구증가론이 대립하는 가운데에서도 가족단체 등 민간의 자발적인 적극적 활동에 따라 가족보호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가족정책의 형성과 발전으로 나아갔다. 반면 한국은 정부와 민간의 숙의민주주의의 형식을 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사회라는 비전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나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1962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되었던 정부 주도 가족계획의 산아제한론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정책담론을 형성하지 못한 채 가족 외에도 노인, 청년, 여성, 주거, 고용, 교육, 보건, 사회보험재정 등을 포괄하는 망라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대비는 인구위기 대응 정책방향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프랑스가 아래로부터 가족단체와 같은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를 정부가 제도화함으로써 가족정책을 발전시켜 왔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양육 당사자의 참여 없이 정부, 학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전문가 체계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극히 포괄적인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 이는 향후 한국의 인구위기 대응에서 출산·양육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프랑스는 가족정책을 자녀의 출산·양육 지원 조치로 정의하고, 그 목표를 유자녀 가족의 생활수준 유지에 두고, 그 기능을 수평적·수직적 소득 재분배 메커니즘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유자녀 가족의 생활수준 저하를 줄이는 것으로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동어반복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같은 선언적 추진과제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대비는 한국의 출산·양육 지원 확대가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구 중심의 잔여적·선별적 제도들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는 한 가지 이유를 보여준다.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출산·양육 지원 조치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출산이 야기하는 가족의 비용과 위험에 대응하여 어느 수준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어떤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유자녀 가족을 지원할 것인지 등의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프랑스 정부는 가족정책을 가족에 대한 직접지원에 해당하는 일반 부양, 출산·보육, 취약계층 특수 할당 등의 가족혜택과 누진세, 가족계수 등으로 구성된 가족세제혜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가족정책의 주요 제도들은 여타 유관 제도들을 포괄하더라도 20여 개를 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한국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경우 출산·양육 지원에 해당하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국한하더라도 100여 개를 훨씬 상회한다.

이러한 대비는 한국의 제도들이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지원과는 거리가 있는 미시적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향후 한국의 출산·양육 지원 제도들을 직접적인 가족지원을 중심으로 OECD 기준 가족지원 공공지출에 해당하는 현금급여, 서비스급여, 세제혜택 등으로 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정책수요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비교와 평가를 통한 개선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2019년 기준 프랑스의 GDP 대비 가족혜택 공공지출 비중은 3.44%로 OECD 38개국 중 1위였고, EU 평균 2.56%와 OECD 평균 2.29%를 훨씬 상회했다. 반면 한국은 1.56%로 33위였고,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에 따른 2021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80명으로 OECD 38개국 중 5위였고, 유럽국 중 1위였다. 반면 한국은 0.81명으로 38위였고, 37위의 스페인(1.19명)에 비해서

도 0.38명이나 낮았다.

이러한 대비는 프랑스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실태와 결과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물론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고 있듯이 가족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다시 말해, 개인의 출산 선택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경제, 고용, 주택, 교육 등의 구조적 변수들까지도 얽혀 있기 때문에 단선적인 평가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인구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족정책이 하나의 전체로서 기여해 왔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한국의 20여년에 걸친 저출산 대응에도 주변국은 물론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저조한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내실없는 가족정책이 출산·양육 확대를 지지하기보다는 인구감축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성찰이 향후의 인구위기 대응을 모색함에 있어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김진리, 「프랑스 적극적연대급여 RSA의 개혁 계획과 근거」,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 겨울호 Vol.23.
- 나병균, 「프랑스의 가족운동과 진국가족단체연합(UNAF): 가족운동의 변천과 그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Vol.36, No.4, 2009.12.
- 나병균, 「프랑스의 초기 가족정책과 정책행위자별 역할」, 『한국사회정책』 제14집 제2호, 2007.
- 민유기, 「20세기 전반기 프랑스 가족보호정책과 사회보장개혁의 공론장 형성」, 『中央史論』 33집, 2011.
- 민유기, 「출산 파업과 '민족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응: 프랑스 가족보호정책의 기원, 1874-1914」, 『西洋史論』 제89호, 2006.
- 박해남, 「20세기 프랑스 가족정책의 변화와 복지 엘리트의 역할」, 『프랑스학연구』 98, 2022.
- 신윤정, 「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가을호 Vol.2.
- 전광희, 「유럽 선진국의 인구·가족정책의 전개과정-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사회과학연구』 제16권, 2005.
- 한국경제, 「라가르드 IMF 총재의 경고..."한국은 집단적 자살사회 같다"」, 2017.10.24.
- Aide-sociale.fr, *Allocation de base PAJE: une aide de la CAF accordée lors de l'arrivée d'un enfant dans le foyer*(<https://www.aide-sociale.fr/>).
- Aide-sociale.fr, *Comment est effectué le calcul du quotient familial? A quoi sert-il? Quelles sont les aides CAF qui en dépendent?*(<https://www.aide-sociale.fr/>).
- Aide-sociale.fr, *Congé de présence parentale: quelles sont les conditions et comment en faire la demande?*(<https://www.aide-sociale.fr/>).
- Aide-sociale.fr, *L'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ou AJPP:*

- Conditions et montant de l'aide*(<https://www.aide-sociale.fr/>).
- Aide-sociale.fr, *Le complément libre choix de mode de garde: Mettre son enfant à garder lors de la reprise d'activité*(<https://www.aide-sociale.fr/>).
- Aide-sociale.fr, *PreParE CAF: comment être indemnisé afin de cesser ou réduire son activité pour s'occuper d'un enfant?*(<https://www.aide-sociale.fr/>).
- Aide-sociale.fr, *Prime de naissance CAF en 2024: combien allez-vous percevoir pour la naissance ou l'adoption de votre enfant?*(<https://www.aide-sociale.fr/>).
- Aide-sociale.fr, *RSA: comment l'obtenir? Combien allez-vous percevoir chaque mois? Où faire votre demande? Suivez le guide*(<https://www.aide-sociale.fr/>).
- Aide-sociale.fr, *RSA: comment l'obtenir? Combien allez-vous percevoir chaque mois? Où faire votre demande? Suivez le guide*(<https://www.aide-sociale.fr/>).
- Chloé Jacquet, *Comprendre le complément familial: droits et démarches*(<https://blog.placedudroit.com/>), 2024.1.18.
- Cleiss, *L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cleiss.fr/>),
- Cleis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cleiss.fr/>).
- Danièle Rouard, *La première conférence annuelle de la famille M. Pierre Mauroy annonce une série d'améliorations pour 1983*, Le Monde, 1982.12.18.
- Economie.gouv.fr, *Quotient familial et impôt sur le revenu: comment ça marche?*(<https://www.economie.gouv.fr/>).
- Françoise Battagliola, *La loi Engerand, première loi sur la protection de la maternité 27 novembre 1909*(<https://francearchives.gouv.fr/>).
- Germain Sicard. *La préparation de la loi du 31 juillet 1920*, Presses de l'Université Toulouse Capitole, 2000(<https://books.openedition.org/>).
- HCFEA, *Les missions du HCFEA*(<https://www.hcfea.fr/>).
- Histoire à la source, *Assistance aux familles nombreuses*(<http://histoirealasource.ille-et-vilaine.fr/>).
- Jeanne Fagnani, *L'intégration progressive du modèle de « la mère qui travaille » Trente ans de politique familiale en France*, Spirale 2001/2 (no 18).

Légifrance, *LOI n° 2008-1249 du 1er décembre 2008 généralisant 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et réformant les politiques d'insertion (1)*(<https://www.legifrance.gouv.fr/>).

Légifrance, *Loi n° 65-570 du 13 juillet 1965 portant réforme des régimes matrimoniaux*(<https://www.legifrance.gouv.fr/>).

Légifrance, *Loi n°88-1088 du 1 décembre 1988 relative au revenu minimum d'insertion* (<https://www.legifrance.gouv.fr/>).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é, *Circulaire DSS/2 B/ n° 2003/612 du 22 décembre 2003-relative à la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https://sante.gouv.fr/>).

Minist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 *Comment calculer votre impôt d'après le barème de l'impôt sur le revenu?*(<https://www.economie.gouv.fr/>).

Nicholas Eberstadt, *East Asia's Coming Population Collapse And How It Will Reshape World Politics*(<https://www.foreignaffairs.com/>), Foreign Affairs, 2024.5.8.

OECD, *Family Database*.

République française,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ASF): enfant recueilli*(<https://www.service-public.fr/>).

République française,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parents séparés*(<https://www.service-public.fr/>).

Service-Public.fr, *Quel est le barème de l'impôt sur le revenu?*(<https://www.service-public.fr/>).

Statista, *Population of France from 1700 to 2020*.

Vie publique, *Dans quelle mesure la politique fiscale et les prestations sociales aident-elles les familles?*(<https://www.vie-publique.fr/>).

Vie publique, *La politique de la famille depuis 1932: chronologie*(<https://www.vie-publique.fr/>).

- Vie publique, *La politique familiale a-t-elle une incidence sur la natalité?*(<https://www.vie-publique.fr/>).
- Vie publique, *Les instruments de la politique familiale*(<https://www.vie-publique.fr/>).
- Vie publique, *Qu'est-ce qu'une politique familiale?*(<https://www.vie-publique.fr/>).
- Vie publique, *Que signifie la modulation des allocations familiales?*(<https://www.vie-publique.fr/>).
- Vie publique, *Que sont les prestations familiales?*(<https://www.vie-publique.fr/>).
- Vie publique, *Quelles sont les mesures fiscales en faveur des familles?*(<https://www.vie-publique.fr/>).
- Virginie De Luca Barrusse, *La politique familiale, un tabou électoral?*(<https://laviedesidees.fr/>), 2012.4.17.

NARS 입법·정책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01호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2018. 03. 13.	허석재
제002호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2018. 05. 31.	정도영 김민창 김재환
제003호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	2018. 06. 22.	문은희
제004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8. 06. 28.	류영아
제005호	현행 지방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편방안 : 지방의회선거를 중심으로	2018. 07. 11.	김종갑
제006호	디지털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과제 : 전문법칙을 중심으로	2018. 07. 26.	조서연
제007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2018. 08. 08.	조주은 최진응
제008호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2018. 09. 21.	허민숙
제009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2018. 11. 15.	김재환 정도영 김민창
제010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2018. 11. 29.	김유향 김나정
제011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8. 11. 29.	신동윤
제012호	연구개발특구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8. 12. 07.	권성훈
제013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개선 과제	2018. 12. 10.	김태엽
제014호	현행 '복지허브화' 정책의 성과 및 개선방안 -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	2018. 12. 11.	이만우
제015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2018. 12. 13.	박선권
제016호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2018. 12. 13.	정준화
제017호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2018. 12. 14.	김현정
제018호	국가 주요 시설물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2018. 12. 14.	김진수
제019호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18. 12. 17.	허민숙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20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및 쟁점	2018. 12. 19.	김도희
제021호	개정 한·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와 향후 과제	2018. 12. 20.	정민정
제022호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입증책임 전환을 중심으로-	2018. 12. 24.	박재영
제023호	시진핑 집권2기 중국 대외정책 결정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2018. 12. 27.	김예경
제024호	난민심사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2018. 12. 27.	백상준 김예경
제025호	남북 이산가족 관련 지원 정책의 실태 및 개선과제	2018. 12. 31.	이승현
제026호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19. 01. 18.	김창호
제027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9. 09. 24.	류영아
제028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2019. 10. 31.	박선권
제029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2019. 11. 01.	최미경 최정민
제030호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2019. 11. 15.	장은덕
제031호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2019. 12. 10.	김진수
제032호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19. 12. 16.	박재영
제033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	2019. 12. 19.	김은진
제034호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9. 12. 23.	김유향 유지연 김나정
제035호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2019. 12. 24.	김영석 박준환 김대명
제036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2019. 12. 26.	이혜경
제037호	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 -도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2019. 12. 26.	구세주
제038호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권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19. 12. 27.	백상준
제039호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2019. 12. 27.	박명희
제040호	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19. 12. 31.	김도희
제041호	상장회사 관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9. 12. 31.	황현영
제042호	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2019. 12. 31.	문은희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43호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2019. 12. 31.	강 지원 조 영은
제044호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2020. 05. 22.	허 민 속
제045호	국회 안전신속처리제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2020. 05. 30.	전 진 영
제046호	ILO 핵심협약의 비준현황과 과제	2020. 06. 24.	신 동 윤
제047호	철도 유희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2020. 06. 30.	구 세 주
제048호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2020. 06. 30.	김 예 성 하 혜 영
제049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0. 07. 10.	김 창 호
제050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2020. 08. 07.	김 예 성
제051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2020. 08. 13.	박 선 권
제052호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0. 08. 28.	김 예 경
제053호	대통령제 정부의 초당적 내각 구성 사례와 시사점	2020. 09. 01.	허 석 재
제054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	2020. 09. 01.	김 종 갑 허 석 재
제055호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2020. 09. 07.	정 준 화
제056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0. 09. 18.	박 혜 림
제057호	한반도 주변 경계미확정 수역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2020. 09. 21.	정 민 정
제058호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2020. 10. 07.	장 영 환
제059호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0. 10. 08.	김 종 규
제060호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2020. 11. 26.	-
제061호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자녀면접교섭을 중심으로-	2020. 12. 04.	허 민 속
제062호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2020. 12. 21.	김 진 수
제063호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 동향과 입법·정책과제	2020. 12. 23.	김 봉 주
제064호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020. 12. 29.	박 연 수
제065호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2020. 12. 30.	장 경 석 송 민 경
제066호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 방안	2020. 12. 30.	박 준 환 김 규 호
제067호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2020. 12. 30.	최 진 응
제068호	제20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	2020. 12. 30.	전 진 영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69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2020. 12. 31.	신 용 우
제070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20. 12. 31.	김민창 박성용
제071호	기부금품 모집·사용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2020. 12. 31.	이송림 한경석
제072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2020. 12. 31.	김광현 이재영 최정인
제073호	일본의 국제 활동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2020. 12. 31.	박명희
제074호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 : 현황과 과제	2020. 12. 31.	이혜경
제075호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2020. 12. 31.	김경민
제076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021. 03. 31.	김형진 박영원
제077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2021. 05. 10.	최은진 강지원
제078호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방안	2021. 05. 20.	박선권
제079호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 가정복지 프레임을 넘어	2021. 06. 04.	허민숙
제080호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쟁점	2021. 06. 17.	류영아
제081호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쟁점과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2021. 06. 30.	이덕남 최재은
제082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2021. 07. 13.	김예성
제083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2021. 08. 19.	이덕남 유지연 최재은
제084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2021. 09. 29.	류영아
제085호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21. 10. 19.	하혜영 김예성
제086호	주요국 의회 이해총돌 심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교	2021. 10. 22.	전진영 최정인
제087호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쟁점과 과제	2021. 10. 25.	유재국
제088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과제	2021. 11. 08.	김예성
제089호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1. 11. 15.	김형진
제090호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에서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미와 시사점	2021. 11. 18.	정민정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91호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도의 설계·운영 및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2021. 11. 25.	이 만 우
제092호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2021. 12. 01.	김 진 수
제093호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 현황과 과제	2021. 12. 02.	유 의 정 조 인 식
제094호	재활용환경성평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1. 12. 03.	김 경 민
제095호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1. 12. 06.	박 소 영
제096호	농업환경관리제도 현황과 입법·정책과제	2021. 12. 07.	장 영 주 김 규 호 유 제 범
제097호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1. 12. 15.	최 정 민
제098호	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021. 12. 16.	심 성 은
제099호	선거관리 실태와 개선과제 -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	2021. 12. 20.	이 정 진
제100호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2021. 12. 21.	이 승 열
제101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실태와 개선과제	2021. 12. 22.	전 은 경
제102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입법과제	2021. 12. 24.	이 수 환
제103호	저성장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2022. 02. 23.	황 인 옥 박 성 용
제104호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사회갈등의 현황과 대응 방안	2022. 03. 29.	정 준 화
제105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2022. 05. 12.	김 예 성 하 혜 영
제106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2022. 05. 17.	박 선 권
제107호	투표용지 양식의 불평등성 논란과 쟁점: 정당 특권과 기호순번제 문제	2022. 05. 26.	허 석 재 송 진 미
제108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2022. 06. 30.	류 영 아
제109호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2022. 08. 24.	허 민 속
제110호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2022. 08. 26.	허 석 재 송 진 미
제111호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2022. 09. 28.	하 혜 영 임 준 배
제112호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	2022. 10. 27.	김 강 산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13호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2. 11. 14.	김 지 민
제114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2. 11. 23.	최 은 진
제115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2. 12. 05.	김 주 경
제116호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2022. 12. 08.	오 창 룡
제117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2. 12. 14.	권 성 훈
제118호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2022. 12. 21.	조 인 식
제119호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국내 여론의 상관관계	2022. 12. 26.	이 승 열 허 석 재
제120호	범죄피해자 등 신변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22. 12. 26.	김 광 현
제121호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2022. 12. 27.	김 예 경
제122호	순환자원인정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2. 12. 27.	김 경 민
제123호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	2022. 12. 30.	이 정 진
제124호	미디어플랫폼 진흥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에 대한 FGI 연구: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2022. 12. 30.	최 진 응
제125호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	2022. 12. 30.	전 윤 정
제126호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2. 12. 30.	김 나 정
제127호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분석	2023. 04. 25.	박 준 환
제128호	출입국향 난민신청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2023. 08. 08.	문 준 혁 조 규 범
제129호	2020년~2023년(상반기)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의 특징과 개선과제	2023.08.14.	정 민 정
제130호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방안	2023.08.22.	김 선 화 김 보 람 원 시 연 장 경 석 오 창 룡 김 광 현 김 나 정 문 준 혁
제131호	동시입후보제 및 석패율제의 국내·외 입법 현황과 쟁점	2023. 10. 30.	허 석 재
제132호	국내·외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시사점: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2023. 10. 31.	배 재 현
제133호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법률전의 평가와 우리의 과제	2023. 11. 16.	정 민 정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34호	초고령사회 대응 장사(葬事)정책의 전환을 위한 입법과제	2023. 11. 20.	원시연
제135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2023. 11. 22.	류영아
제136호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	2023. 12. 01.	류호연
제137호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3. 12. 12.	원시연
제138호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 12. 13.	전진영 오창룡
제139호	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2023. 12. 18.	박총렬
제140호	금산분리 완화 관련 공정거래법 발의안의 동향과 쟁점	2023. 12. 21.	최은진 박미영
제141호	연동형 혼합선거제의 운영 현황과 작동 조건	2023. 12. 22.	허석재
제142호	UN과 EU 제재 비교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23. 12. 26.	심성은
제143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위험요소와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	2023. 12. 26.	김형진
제144호	인터넷 투표제도 쟁점과 도입 방향	2023. 12. 26.	송진미 오창룡
제145호	일본 기시다 내각 외교안보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2023. 12. 27.	박명희
제146호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2023. 12. 29.	유재국 박선권
제147호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2023. 12. 29.	전윤정
제148호	방송사업자간 흡소평송출수수료 갈등요인과 과제	2023. 12. 29.	최진응
제149호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2023.12.29	이동영
제150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종료 대비방안	2024. 04. 24.	정민정
제151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2024. 06. 28.	류영아
제152호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2024. 07. 18.	허민숙
제153호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 - 납세자 권리구제와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	2024.07.22.	임재범

NARS 입법·정책 제154호

발간일	2024년 9월 25일
발행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편집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4720
인쇄	(주)케이에스엔씨에이션 (TEL 02·761·0031)

-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연구보고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보고서·발간물〉에서 국회의 각 입법지원 조직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와 발간물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586-5668

발간등록번호 31-9735042-001873-14

© 국회입법조사처, 2024

NARS 입법정책

주요입법 및 정책에 관한 주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6788-4510(代) www.nars.go.kr



발간등록번호 31-9735042-001873-14

ISSN 2586-5668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